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

노숙인 시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친화적 관점에서
서울시 노숙인 시설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여
공간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항목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 및 응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삽입된 그림 및 사진은 해당 가이드라인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사례시입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노숙인 시설을
새롭게 계획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각 시설의 개보수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공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계획이 더해져서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숙인 시설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노숙인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의의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감성을 디자인을 통해 배려하는 '디자인복지'를 향한 첫 걸음이다.

각기 다른 형태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야말로 기능적 하드웨어의 제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시정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체, 행동, 상황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EACH)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모두(ALL)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원칙들을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에 있어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복지환경디자인이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축대로 더욱 진화되기를 바란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서울시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해당된다.



EACH and ALL

각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 행동, 상황별차이를 배려하여
다양한 사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사용자 친화의 서울시 복지시설 환경디자인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칙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사용자(EACH)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모두(ALL) 존중받을 수 있는 사용자 친화의 복지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지원성, 안전성, 인지성, 건강성, 지속가능성'의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원리를 적용하여 복지시설의 수준 향상
-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 개발
- 이용자 친화형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서울의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물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지표로서 활용
-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기준
- 서울의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시 디자인원칙을 공유하는 도구로 활용
-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의 지침으로 활용

목차

서울시 노숙인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I. 들어가기

01. 시설 이해하기	12
1. 노숙인 시설이란?	
2. 노숙인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3. 노숙인 시설 현황	
02. 이용자 이해하기	19
1. 노숙인이란?	
2. 노숙인의 특성	
3. 노숙인의 현황	
4. 노숙인의 유형	

II. 기본방향

- 01. 안전하고 건강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한다. 24
 - 1. 물리적 장애 제거
 - 2. 비상시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 3. 쾌적하고 건강을 고려한 환경
- 02.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한다. 27
 - 1.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계획
 - 2. 다양하고 차별화된 환경을 조성
 - 3.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 03.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한다. 30
 - 1. 자존감을 높여주는 공간
 - 2.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공간
 - 3. 시설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공간
- 0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3
 - 1. 양호한 공기질 확보
 - 2. 양호한 빛환경 확보
 - 3. 건강한 음환경 확보
- 05.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36
 - 1. 공용공간의 지역사회 개방
 - 2. 지역사회의 친숙한 디자인
- 06. 치유를 돕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38
 - 1.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계획
 - 2. 색채를 이용한 치유 효과
 - 3. 미술품을 활용한 치유 효과

III. 공간구성 계획

- 01. 시설구성과 공간계획 42
 - 1. 소요공간 및 공간구성
 - 2. 노숙인의 특성에 따른 공간 및 장소
- 02. 공간의 단계적 / 연속적 구성 44
 - 1.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공간
 - 2. 다양한 공유 / 공용 공간 구성
 - 3.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
- 03. 합리적인 동선 및 공간계획 47
 - 1. 기능별 연계와 독립성의 유지
 - 2. 충분한 수납공간의 확보
- 04. 공간구성 사례 48
 - 1. 자활시설
 - 30인 이상 시설
 - 30인미만 10인 이상 시설
 - 모자보호시설
 - 2. 종합지원센터
 - 3. 해외사례

IV. 세부공간 디자인

01. 접근공간	60
1. 주출입구	
2. 출입문	
02. 생활공간	63
1. 수면실	
2. 거실	
3. 환자격리실 및 임종실	
03. 치유 및 활동공간	68
1. 프로그램실	
2. 직업훈련실	
3. 도서실	
4. 체력단련실	
5. 대기 및 휴게실	
04. 위생공간	72
1. 화장실	
2. 샤워실	
05. 급식공간	75
1. 식당	
2. 조리실	
06. 관리 및 서비스공간	76
1. 사무실	
2. 상담실	
07. 기타	79
1. 복도	
2. 계단	
3. 엘리베이터	

V. 공통 디자인요소

01. 마감재	88
02. 문과 창	94
03. 색채	98
04. 조명	100
05. 사인	103
06. 가구 및 수납	105

VI. 부록

01. 법적 기준 및 권장사항	108
02. 체크리스트	121
03. 노숙인시설 컨설팅 사례	124
1. 양평 쉼터	

I. 들어가기

- 01. 시설 이해하기
 - 02. 이용자 이해하기
-

1. 노숙인 시설이란?

노숙인 시설이란 빈곤과 실직 등의 이유로 거주할 집이 없거나, 일정한 주거가 있어도 사정상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공공장소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내용]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 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쪽방 상담소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쪽방 밀집지역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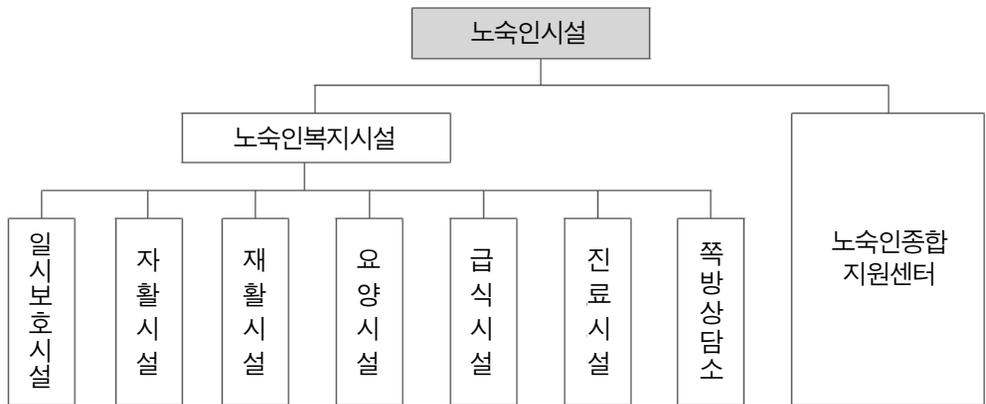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노숙인 시설의 목적]

- 노숙인, 부랑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서비스 체계를 노숙인 서비스 체계로 단일화
-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의 기반시설로 역할 중실
- 노숙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
- 민간과 공공의 협력과 역할 분담
- 정부 부처간의 협력 강화

[노숙인 시설의 유형]

- 2012.6.8 이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2. 노숙인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구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시설 면적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99㎡(3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50㎡(15평) 이상일 것
수면실면적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49.5㎡(15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8평) 이상일 것
설비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비교

-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 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다른 노숙인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숙인 자활시설]

구분	상시 30인 이상인 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인 시설	상시 10인 미만인 시설
1인당 시설면적	13.22㎡ 이상	9.9㎡ 이상	9.9㎡ 이상
1인당 수면실 면적	3.3㎡ 이상	3.3㎡ 이상	3.3㎡ 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해당한다), 의무실(100인 이상 시설 기준),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비교

1. 상시 입소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3,22\text{m}^2 \times 100 + 13,22\text{m}^2 \times 0,7(\text{입소정원}-100)$ 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숙인 재활시설]

구분	상시 30인 이상인 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인 시설	상시 10인 미만인 시설
1인당 시설면적	15.9㎡ 이상	15.9㎡ 이상	13.22㎡ 이상
1인당 수면실면적	5.0㎡ 이상	5.0㎡ 이상	3.3㎡ 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 작업장(100명 이상인시설만 해당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 비교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text{m}^2 \times 100 + 15,9\text{m}^2 \times 0,7(\text{입소정원}-100)$ 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재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숙인 요양시설]

구분	상시 30인 이상인 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인 시설	상시 10인 미만인 시설
1인당 시설면적	18.48㎡ 이상	18.48㎡ 이상	13.22㎡ 이상
1인당 수면실면적	6.6㎡ 이상	6.6㎡ 이상	3.3㎡ 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 작업장(100명이상인시설만 해당),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 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급수·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8.48\text{㎡} \times 100 + 18.48\text{㎡} \times 0.7(\text{입소정원} - 100)$ 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숙인 급식시설]

- 1) 노숙인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한다.
- 2) 노숙인 급식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다.

[노숙인진료시설]

- 1) 노숙인 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 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한다.
- 2) 노숙인 진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다.

[쪽방 상담소]

구분	쪽방상담소
시설 면적	92㎡(28평) 이상일 것
설비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비고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구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설 면적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32㎡(40평) 이상,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은 92㎡(28평) 이상일 것
설비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비고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노숙인 시설 현황

- 노숙인 시설이란 빈곤과 실직 등의 이유로 거주할 집이 없거나, 일정한 주거가 있어도 사정상 실제로 거주하지 못하고 공공장소,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 서울시에는 전체 40개의 노숙인시설이 있는데, 노숙인상담센터가 5개, 노숙인재활쉼터가 2개, 노숙인쉼터가 33개 있다.

[서울시 노숙인시설 현황]

분류	시설명
노숙인 상담센터(5)	시립브릿지상담센터,시립다시서기상담센터, 옹달샘, 햇살보금자리, 만나샘
노숙인 재활쉼터(2)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전용), 아가페의 집(여성전용)
노숙인 쉼터(33)	사랑의집,나래자활쉼터,시립양평쉼터, 강동복지관 희망의집, 구로노인복지관 희망의집, 청담광명의집, 가나안쉼터, 구세군일죽쉼터, 서대문사랑방, 시립게스트하우스, 장위복지관쉼터, 십자가쉼터, 정릉복지관쉼터, 아침을여는집, 두레 사랑의쉼터, 행복한우리집,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시립중간쉼터(기초해결센터), 광야홀리스센터, 서계보현의집, 인덕희망의집, 수송보현의집, 소중한사람들,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반석희망의집, 대한성공회살림터, 길가온혜명, 신당희망의집, 힌들희, 성수삼일내일의집, 열린여성센터, 천애원희망의집

- 노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쉼터에서 방별 생활인원을 조사한 결과 4명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10~15명의 많은 인원이 생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방별 적정 인원 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4명이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나타내 4명 정도의 인원이 생활하는 규모 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쉼터에서의 방별 생활 인원]

인원	빈도	백분율
3명	10	3.3
4명	66	21.8
5명	27	8.9
6명	21	6.9
7명	16	5.3
10명	50	16.5
11명	18	5.9
12명	21	6.9
15명	34	11.2
18명	40	13.2

[방별 적정 인원]

인원	빈도	백분율
1명	6	2.0
2명	37	12.2
3명	56	18.5
4명	61	20.1
5명	55	18.2
6명	50	16.5
7명 이상	38	12.5

02

이용자 이해하기

1. 노숙인이란?

- "노숙인"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의 특성

- 노숙의 장기화는 자아의 상실, 가족관계의 해체, 결과적으로 부랑자와 같이 알콜 · 약물중독, 정신질환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폭력과 범죄, 사회불안요인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노숙인의 심리적 특성]

연구자	노숙인의 심리적 특성
Cramer(1989)	삶의 목적과 희망의 상실을 경험, 자기효능의 손상과 무력감, 절망감, 체념, 비관주의
Gory(1990)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의 손상을 매개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
Smith(1991)	학습된 무기력, 자기효능 상실, 외적 통제위, 우울, 알코올 및 약물 의존, 수동성, 변화에 대한 의욕상실
Sumerin(1995) Flynn(1997)	학습된 무기력, 자아존중감의 저하, 낙인으로 인한 우울, 무능력에 대한 죄책감,
Hearth(1996)	도움을 받지 못함, 목표설정을 못함, 희망의 상실, 대인관계의 손상과 사회적 고립, 낙인으로 인한 우울, 불안과 적대감,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죄책감
Applewhite(1997)	의기소침, 자살경향, 분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아존중감의 저하, 공격성, 무기력, 동기저하 등
다수의 연구자	약물 의존, 정동장애, 불안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 (노숙인의 20~25%가 해당)
경기도 실직노숙자 대책협의회, 주영수(2000)	자아존중감 저하, 자신감의 결여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위축, 사회적 고립, 무력감과 우울, 절망감을 유발
Taylor 등 (1997)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상실감, 관습적인 사회적 의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됨.

3. 노숙인의 현황

- 전국 노숙인은 약 4,667명으로 이 중 약 75%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1100여명의 노숙인이 있는데, 주로 용산구와 중구, 영등포구에 집중되어 있다.
- 노숙인의 성비는 남자가 1000명을 넘는데 반해 여자는 50~60명 정도로 적다.

[전국 노숙인 규모]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숙인	5,046	4,838	4,439	4,540	4,466	4,722	4,856	4,544	4,796	4,664	4,667
쉼터	-	-	-	-	3,497	3,763	3,563	3,363	3,479	3,404	3,470
거리	-	-	-	-	969	959	1,293	1,181	1,317	1,260	1,197

[서울시 거리 노숙인 현황]

자치구	강동구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1차조사	28	11	8	1	25	7	18	2	12
2차조사	15	12	10	2	22	0	6	3	5
자치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1차조사	4	30	13	14	10	24	4	1	88
2차조사	6	27	3	6	6	0	5	0	82
자치구	은평구	영등포구	용산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그 외	계
1차조사	11	125	409	0	66	206	19	9	1,145
2차조사	3	164	478	0	66	170	12	6	1,109

[서울시 거리 노숙인 인구 구성비 현황]

구분	남성	여성	그 외		계
			노인	장애인	
1차조사	1,054	58	32	1	1,145
2차조사	1,016	47	39	7	1,109
평 균	1,035	53	36	4	1,128

4. 노숙인의 유형

- 노숙인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노숙인이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 또한 없는 경우가 있다.

- 신체건강상 문제 + 생활능력 없음.

-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음.

- 건강한 신체 + 실직

-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없음.
- 소득 불균형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 신체건강상 문제 + 부채

- 신체건강상 문제가 있고, 부채가 있어 저축이나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 주택보다는 먼저 부채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안정이 시급한 집단.

[노숙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방법]

구분	노숙인의 특성	지원서비스
통합지원	- 근로능력 상실 - 신체, 정신적 문제	- 일상생활지원 -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 -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소개
일자리지원	- 근로능력 미비	-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 - 알코올 재발방지 시스템 - 일자리 연계 등 선택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 장기노숙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 건강 문제	- 의료체계 연계 - 직업훈련 및 연계지원

II. 기본방향

01. 안전하고 건강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한다.
 02.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한다.
 03.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한다.
 0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05.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06. 치유를 돕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01

안전하고 건강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한다.

노숙인 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청년, 일반인과 범죄경험자(출소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 장애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오랜 노숙으로 인하여 청결의식이 부족한 이용자들로 공간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청결을 습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필요가 있다.

1. 물리적 장애 제거

- 원활한 통행을 위해 물리적 장애를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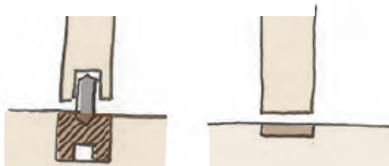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없애고 복도와 문턱의 바닥 단차를 해소하여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
- 가구의 모서리를 곡면 처리하거나 돌출 또는 튀어나온 벽면의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 또는 코너비드(모서리 보호대) 등을 설치한다.
- 휠체어 및 보행보조용구 이용자를 고려한 충분히 넓은 통로 폭을 확보하고, 핸드레일 등의 보조 설비를 설치한다.
- 사고방지를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 등은 둥글게 마감한다.
- 물을 사용하는 공간(현관, 욕실, 화장실 등)의 미끄럼 사고에 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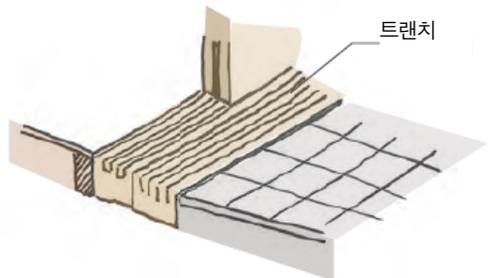
서로 다른 바닥재 연결 부위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재료분리대로 마감



문틀을 바닥에 매입하여 단차가 없는 문지방



미닫이문의 레일이나 문틀을 바닥에 매입하여 단차를 제거



트렌치

욕실, 발코니 등의 출입구에 단차를 없애고 틈이 좁은 트렌치 설치



단차를 제거한 바닥



기둥 모서리 보호대 설치



모서리를 둘러싼 핸드레일 설치

2. 비상시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 재해 및 사고를 대비한 공간 및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와 같은 대피 공간을 마련하고, 추락 방지턱과 완강기를 설치 하도록 한다.
- 비상시를 고려하여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등의 설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구들의 위치는 고정 되어 있도록 한다.

- 일상적인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한다.

- 화장실과 욕실에는 물기로 인한 미끄럼 방지 설비를 하고, 문은 비상시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계획한다.
- 불을 사용하는 주방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길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커튼이나 침구류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방염처리를 한다.

- 만약을 대비한 싸움, 폭행등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한다.

- 폭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 한다.
- 가구나 집기 등을 가능한 고정형으로 설치하고, 날카롭고 위험한 재료의 사용을 자제한다.

3. 쾌적하고 건강을 고려한 환경

- 청결에 취약한 노숙인들이 정돈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 세면시설 및 손소독기 등을 1층 출입구쪽에 설치한다.
-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결핵 등의 전염성 환자는 생활구역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 충분한 세탁시설과 이미용공간을 계획한다.
- 맞바람이 불도록 창을 계획하여 냄새등이 빠져나가기 쉽도록 설계한다.



세탁실과 이미용 공간,접근이 쉬운 세면대 설치

02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한다.

마땅한 주거가 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감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불안과 공포심에 심신이 지쳐있다. 이러한 노숙인에게 시설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만 불안한 정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미래의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1.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계획

- 차갑고 딱딱한 소재의 사용 지양하고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공간을 계획한다.

- 노숙인에게 소속감을 주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주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관리의 용이함을 위주로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 이는 차가운 시설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 콘크리트, 타일,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차가운 소재는 최소화하고 목재, 패브릭 등 따뜻한 느낌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자연친화적인 소재(나무, 돌)는 시각적 만족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

2. 다양하고 차별화된 환경을 조성

- 획일화된 시설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한다.

- 각 실별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색상 또는 형태의 변화로 공간의 인식을 높이고 단조로움을 탈피한다.
- 수동적인 성향의 노숙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능동적 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의 색상을 달리하여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환경을 배려

3.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 다인실의 경우 독립된 사물함을 비치하고 사물함 앞의 공간을 개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 개인의 소유권이 구별될 수 있도록 사물함에 이름을 부착한다.
- 노숙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은 자아의 가치, 독립성,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함에 도움을 주며, 정서적 해방으로 긴장감에서 떠나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자아평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합하여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 침대를 설치할 경우 개인공간의 구분이 명확해질 수 있다.
- 개인영역과 공동생활영역의 바닥마감재를 달리함으로써 영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노숙인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으므로, 임종실을 별도로 계획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안락한 침실로 프라이버시 확보



잠금장치가 설치된 개인사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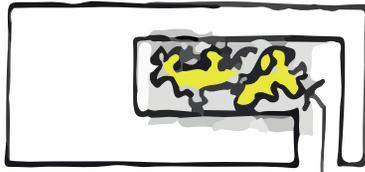
03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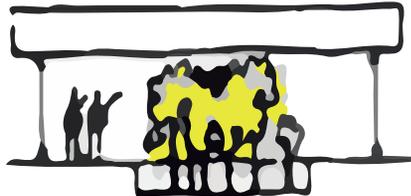
노숙인은 오랜 노숙으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존감의 상실과 낙인에서 오는 우울, 자기효능감의 상실, 삶에 대한 무력감, 무능력감 등으로 심한 경우 알콜중독, 약물중독, 정신분열증 등을 갖게 된다. 또한 노숙인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이 노숙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1. 자존감을 높여주는 공간

- 노숙인은 오랜 노숙생활을 통하여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의 상실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노숙인시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감정이므로,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공간, 즉 작은 부분에서 정성이 느껴지도록 공간을 디자인한다.
- 심리치료실, 상담실을 배치하여 심리치료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실을 마련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내적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외부와의 연계



내부로의 도입

2.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공간

- 삶의 목적을 상실함으로써 갖게 된 무기력, 무관심을 자극하여 삶의 의욕을 활성화시켜주는 환경을 조성한다.

· 복도, 식당 등 공용공간에 다양한 사진, 그림, 예술품 등을 전시하여 호기심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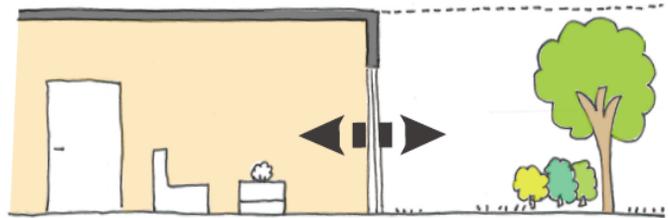
- 잃어버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공간

· 다양한 직업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전시하거나, 각종 직업을 소개하는 게시판 등을 마련한다.

·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 작업실, 도서관 등을 계획한다.

- 재활치료를 신체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공간

· 재활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이 신체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녹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 치료공간을 계획한다.



실내에서 출입할 수 있는 옥외정원, 발코니, 중정 등을 설치하여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공간

- 특수노숙자쉼터, 직업훈련쉼터, 취업알선쉼터, 자활공동체쉼터 등 쉼터별 특성에 맞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 특수노숙자 쉼터는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용쉼터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쉼터는 특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훈련공간이 필요하다.
- 취업알선쉼터 및 자활공동체쉼터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토론실, 휴게실 등 공동 사용공간을 중점적으로 디자인한다.
- 치료.보호쉼터는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폐질자 등 자활능력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모든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치유환경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시설 분류	시설의 기능
특수노숙자쉼터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용쉼터
직업훈련쉼터	요리, 전기기술, 건설기능 등 특화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 전문쉼터
취업알선쉼터	건설일용직, 전기공 등 이미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 가능한 쉼터 입소자들에게 취업 알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치료.보호쉼터	알코올중독자, 가벼운 정신질환자 및 폐질자 등 자활의지가 없어 시설보호가 필요한 쉼터 입소자들을 위한 치료.보호쉼터
자활공동체쉼터	봉제업, 건설업, 배달업 등 자활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쉼터에 참여를 원하는 노숙자를 재배치하여 운영되는 자활공동체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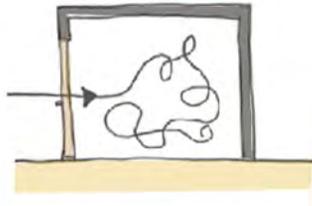
0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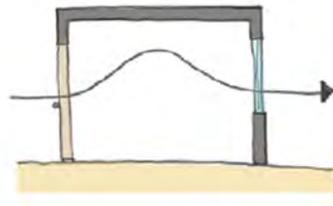
쾌적성은 청각, 후각, 시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영역으로 귀로 들리는 소음, 코를 통해 들어오는 불쾌한 냄새, 피부로 느끼는 온도, 햇빛의 양, 눈앞에 펼쳐진 시각적 이미지 등 쾌적성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감각이 살아있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충족될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1. 양호한 공기질 확보

- 항상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악취가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 기계식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한다.
-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
- 실내에 맞바람이 불도록 창을 계획한다.



[지양]
창이 설치되지 않아 환기와 통풍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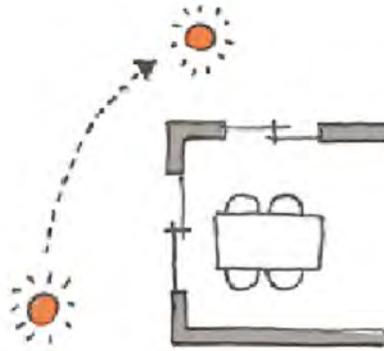


[권장]
환기와 통풍이 용이하도록 출입구와 창을 설치함.

2. 양호한 빛환경 확보

- 감성을 조절하는 자연채광과 조명계획을 확립한다.

- 채광이 가능한 창을 계획하며, 동시에 에너지 효율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인공조명은 자연광에 최대한 가까운 것을 사용하고, 공간의 성격과 활동, 분위기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명암순응의 기능이 둔해지므로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나 현관은 낮에도 특히 밝게 보이도록 한다.



창을 두 방향의 벽면에 설치하여 자연광을 최대한 유입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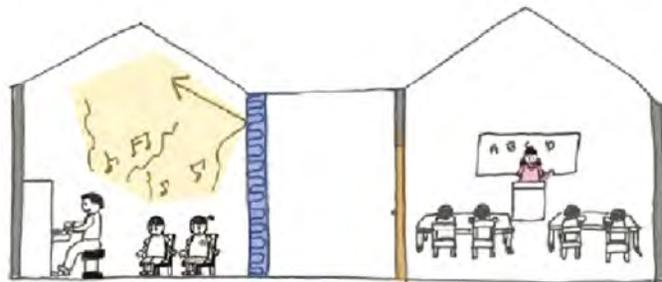
3. 건강한 열환경 확보

- 건축적, 자연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계절이나 온도변화에 대응한다.

- 냉, 난방 설비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쉽고,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도입하며, 생활실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식당, 로비 등 개방된 공간이 많고,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심야까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연통풍과 채광 등 외부의 환경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4. 건강한 음환경 확보

- 흡음 및 차음성능의 마감재, 실 배치 등으로 소음발생원 대책을 확립한다.
- 소리의 반사 등은 지저분한 음환경을 만들어 스트레스 요인이 됨으로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 복도나 로비같은 공용공간은 흡음재를 사용한다.
- 소음 발생원이 되는 화장실, 욕실, 설비공간은 실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흐르는 물소리, 새가 지저기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있도록 한다.
- 자연의 소리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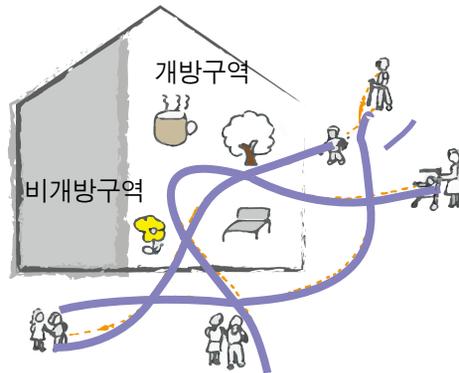


소리가 발생하는 공간에는 흡음재를 설치하여 조용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노숙인시설은 좀 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 정돈된 외관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운동공간, 녹색공간등을 계획한다.

1. 공용공간의 지역사회 개방

- 지역에 개방된 옥외정원, 로비, 카페,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다.
-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옥외정원, 운동시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이루고, 노숙인에게도 사회와의 단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설 앞마당에 카페테리아,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계획한다.
- 직업훈련을 통해 만든 제품 혹은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 노숙인시설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나온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통해 외부인도 구매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노숙인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사회와 친숙한 디자인

- 딱딱하고 차가운 시설의 느낌이 아닌 따뜻하고 자연친화적인 외관으로 디자인한다.
- 건물 외관의 이미지가 차갑고 삭막한 시설의 느낌을 주지 않도록 형태와 마감재 선택에 주의한다.
- 조경계획을 통해 나무와 건물이 어우러져 전원주택의 느낌을 주도록 한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외관



[지양] 주변지역사회와 이질감이 느껴지며 시설적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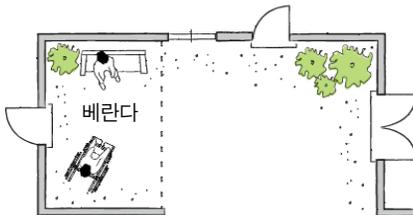
[권장] 주변 지역사회와 조화되어 시설이 아닌 집으로 느껴지는 디자인

치유는 질병으로 인하여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육체, 정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노숙인은 오랜 시간 정착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노숙인이 생활하는 동안 자활과 재활을 이루는 것은 시설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단순한 거주 기능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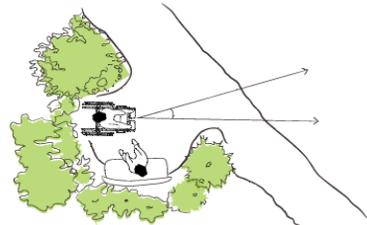
1.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

- 인간은 자연을 보며 치유를 경험한다.

- 수목은 생명력, 활력소 등을 가져다주는 자연요소로서 심신의 안정을 가져온다.
- 수목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고, 실내공기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목체를 감상하는 데서 오는 미적효과와 함께 심리적 안정 효과로 정신 생리학적 치유효과를 볼 수 있다.
- 물(水)은 맑고(시각), 흘러가고(청각/시각), 시원하고 부드러운(촉각), 그 향기(후각)는 쾌적함을 준다.
- 시각적으로 자주 물을 접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병에 대한 면역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2-3개의 공간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캐노피와 의자를 두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정원이나 실외놀이터에는 편안한 벤치가 있는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외공간을 제공함

2. 색채를 이용한 치유 효과

- 색채를 이용한 치료는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효능을 꺼내 심리적, 생리학적인 치유를 이루는 것이다.
- 시설 전체가 똑같은 색으로 계획되는 것을 피하고, 실 별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 노숙인시설은 밝은 색채를 이용하여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품도록 계획한다.

[색상별 치유효과]

- 빨강색(Red) : 혈액순환을 촉진 시키며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색이다.
- 주황색(Orange) :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기통, 흥부와 신장병에 도움을 준다. 식욕을 돋우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색이다.
- 노란색(Yellow) : 피부, 신경계통,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희망,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색이다.
- 녹색(Green) : 긴장을 완화 및 피로감 감소, 두통, 불면증, 히스테리에 효과가 있고, 생리기능의 조절로 조화로운 심리상태를 유도하는 색이다.
- 파란색(Blue) : 두통, 스트레스, 신경계통에 도움을주며 긴장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 향상에 좋은 색이다.
- 보라색(Purple) : 시력향상, 눈, 코, 귀의 기능에 도움을 주고 심리적 에너지를 주는 색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흰색(White) : 고통 완화에 효과가 있고, 명상 중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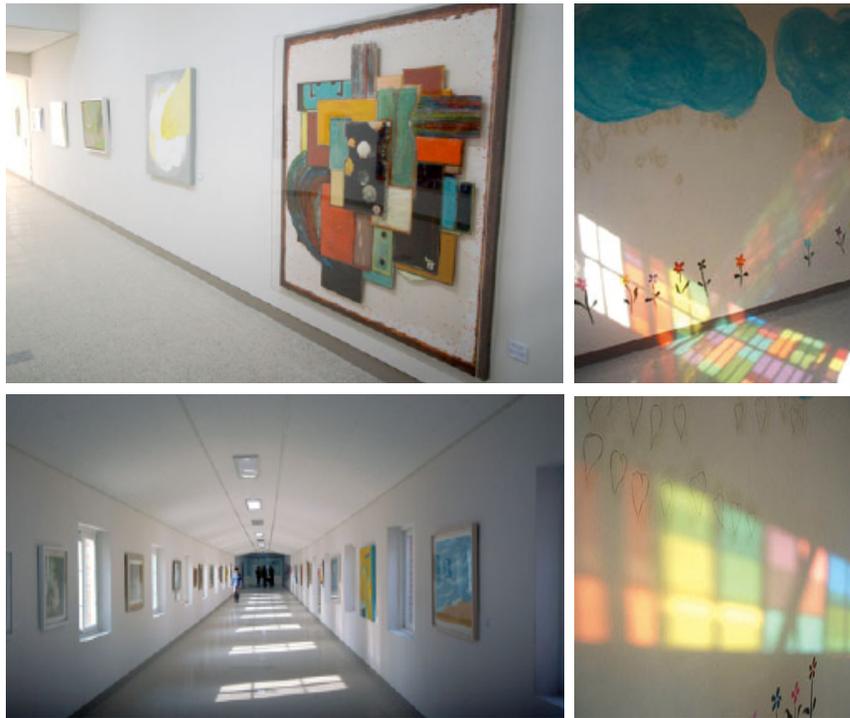
3. 미술품을 활용한 치유 효과

- 아름다운 미술품은 삶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임을 인식시킨다.

- 병원에서는 미술품을 통해 삶의 가치를 환자들이 느끼게 함으로써 병과 고통에 투쟁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부여한다.

- 미술품은 미적인 기능을 넘어서 치료적 성격의 것 이어야 한다.

- 희망, 기쁨, 관심, 존중 등의 메시지가 담긴 이미지(미술품)는 노숙인들에게 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미술작품을 사용하여 치유환경으로 계획한 복도

Ⅲ. 공간구성 계획

01. 시설 구성과 공간 계획
 02. 공간의 단계적/연속적 구성
 03. 합리적인 동선 및 공간계획
 04. 공간구성 사례
-

노숙인시설은 생활시설이며 재활시설이다. 오랜시간 노숙생활로 갖게 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공간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공간, 재활공간, 직업훈련공간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1. 소요공간 및 공간구성

- 노숙인시설의 소요공간 및 공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집과 같은 환경으로 계획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한 시설내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가 소속감을 갖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각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실, 직업훈련실, 재활치료실 등을 계획한다.
- 전체적인 시설의 계획의 기반에 치유환경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 곳곳에서 심리적 치유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시설유형 및 공간구성]

시설유형	생활	위생	치료 및 재활	치유 및 활동	직업훈련	급식	관리 및 서비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	•		•	•	•	•
노숙인 자활시설	•	•		•	•	•	•
노숙인 재활시설	•	•	•	•	•	•	•
노숙인 요양시설	•	•	•	•		•	•
노숙인 급식시설		•				•	
노숙인 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			•

[공간 요소별 소요실 구성]

구분	구성
생활공간	거실, 침실
위생공간	화장실, 샤워실
치료 및 재활공간	물리치료실, 기타치료실(치과치료, 내과치료실 등), 심리치료실
치유 및 활동공간	휴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직업훈련공간	프로그램실, 집단활동실, 강의실, 도서관
급식공간	식당 및 조리실
관리 및 서비스공간	관리실, 사무실

2. 노숙인의 특성에 따른 공간 및 장소

- 노숙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기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 가족연계 혹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가족이 이미 해체되었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숙인을 위해서 가정을 대신할 공간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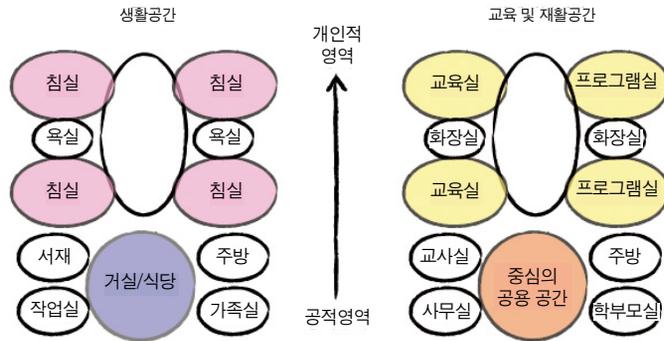
가정과 같은 친숙함을 확보하고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 (중간 영역적인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고 활동공간의 확장이나 변화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공간

- 노숙인의 생활과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생활단위와 관리단위로 구분하여 가정과 같은 공간구성의 생활단위를 중심으로 공간의 위계가 있어야 한다.
- 공간구성은 개인공간(private space)인 침실, 공용공간인 식당, 거실, 관리공간인 사무실, 외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적공간(public space)이 단계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외부공간과의 연계, 조망의 유무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2. 다양한 공유/공용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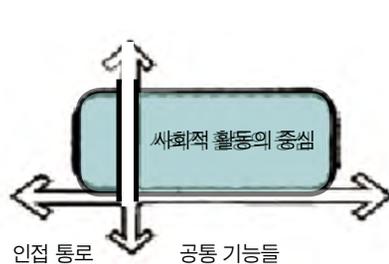
- 공적공간에서 개인적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현관이나 출입문 근처에 사무실을 인접 배치하여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 위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을 생활공간과 근접하여 배치한다.
- 침실은 현관, 거실 등과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복잡한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생리 위생공간과 인접하도록 한다.
- 관리공간 중 화장실, 세탁실, 욕실 등 위생관련 공간은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동선을 최소화한다.



입구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공용공간을 거쳐 각 활동영역으로 접근하도록 배치

3.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

- 생활과 재활의 중심이 되는 주방이나 세탁실 같은 공용공간은 노숙인들이 직접 역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 거실은 독립적으로 작은 그룹이 활동 가능한 공간을 형성한다.
-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현관이나 실외 환경은 이웃 주민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교류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이나 텃밭, 벤치 등을 구성하여 만남과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실 및 상담실을 계획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건물의 중앙에 배치하고 주동선과 인접하도록 함



건물의 가운데 있는 연결공간의 일부를 휴식 및 교류를 위한 공용공간으로 만들



개인수납장 설치와 구조 기둥을 이용한 소파공간으로 활용

03

합리적인 동선 및 공간계획

개인생활공간과 공동생활공간, 재활치료공간, 직업훈련공간, 서비스 공간의 연결동선을 계획하고 개인영역과 공동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개인 영역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1. 기능별 연계와 독립성의 유지

- **편안한 교육 및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소규모로 공간을 구성한다.**

- 가급적 연관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근접 배치하여 공용의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외부공간과의 연계, 조망의 유무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 **생활공간에서 개인영역과 공동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 공동침실의 경우 개인의 영역구분이 모호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물함, 침대 등을 통해 개인의 영역이 구분되도록 계획한다.
-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숙인을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계획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충분한 수납공간의 확보

- **개인물품과 공동물품을 보관할 별도의 수납장을 비치한다.**

- 수납가구는 되도록 붙박이 또는 고정형으로 설치하여 처음 계획된 공간의 구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 개인수납장은 세로로 긴형태의 가구를 선택하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많은 양의 세탁물을 말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계획한다.**

- 마당이나 공용공간에 빨래건조대를 놓을 경우 기존에 공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세탁물을 말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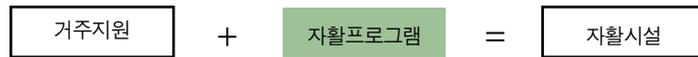
공간구성 사례

[노숙인 복지시설의 유형]

- 노숙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시설' 서비스 차원에 한정될 수 없고, 노숙인은 '주거'의 결핍상태로 가시화되었으므로 시설은 '거주지원서비스'를 가장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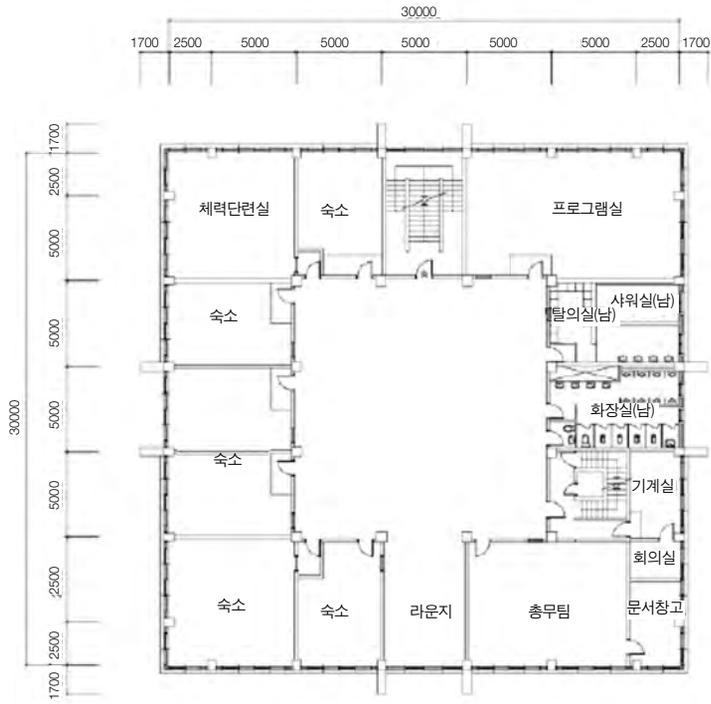
1. 자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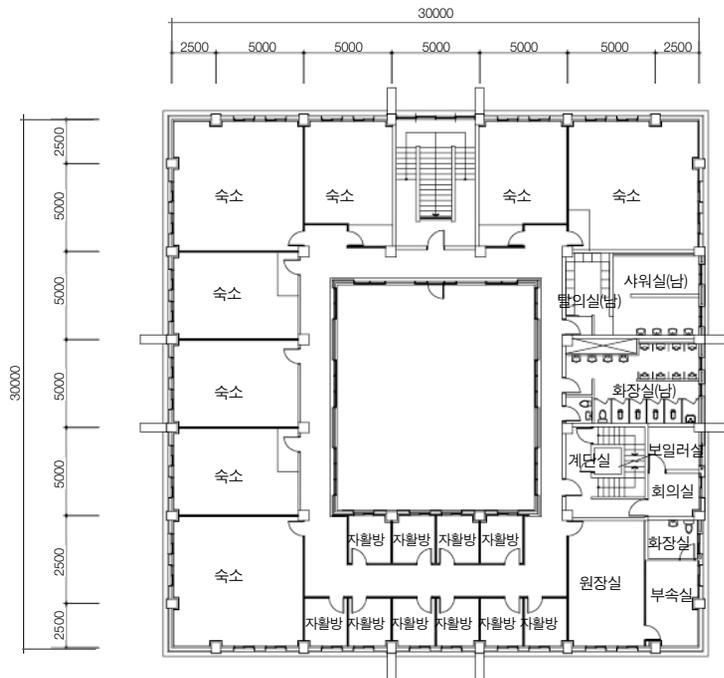
- 30인 이상 시설

[개요]

- | | |
|-----------------|-----------------------|
| · 시설명 : B 노숙인시설 | · 개원년도 : 1998년 5월 16일 |
| · 시설유형 : 노숙인 시설 | · 시설현황 : 지하 2층~지상 3층 |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30인 미만 ~ 10인 이상 시설

[개요]

· 시설명 : K 노숙인 시설	· 개원년도 : 1998년 5월 16일
· 시설유형 : 노숙인 시설	· 시설현황 :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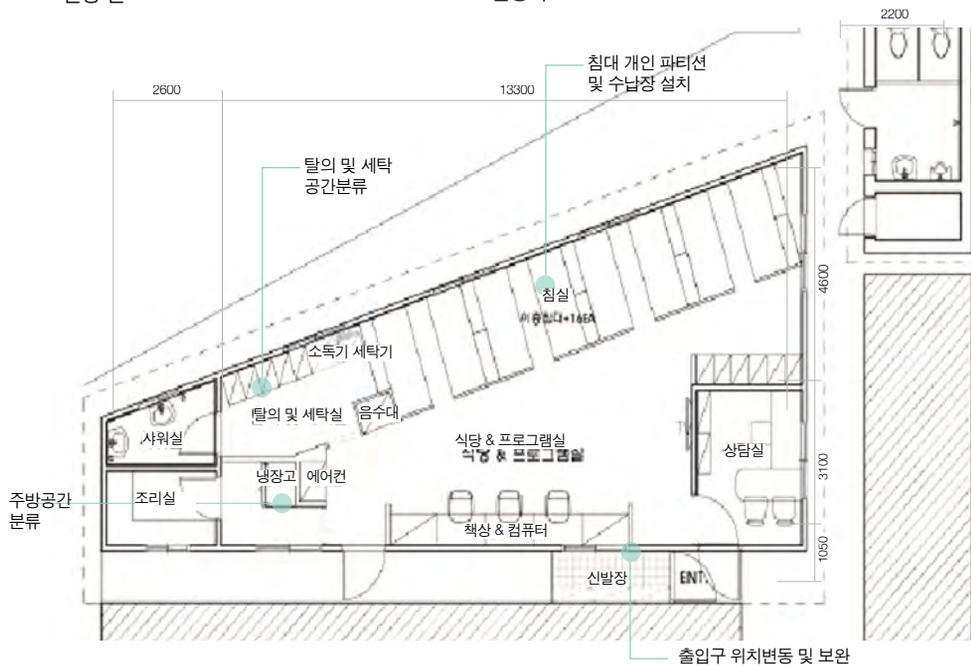
- 공간분리를 위한 파티션 설치



변경 전



변경 후



- 모자보호시설

[개요]

- 시설명 : H 모자보호시설
- 시설유형 : 모자보호시설
- 개원년도 : 2004년 11월 5일
- 시설현황 :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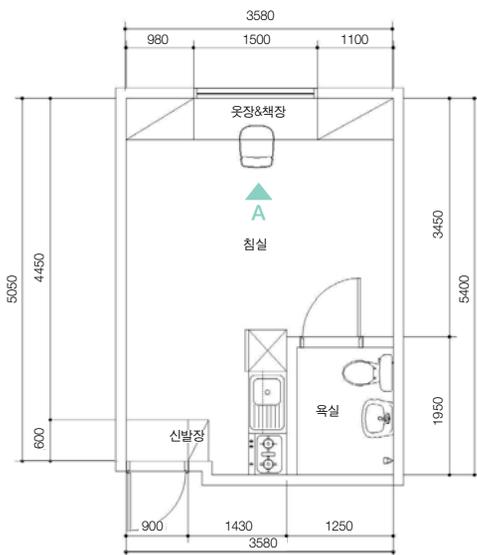
- A TYPE : 아이들을 위한 책상+옷장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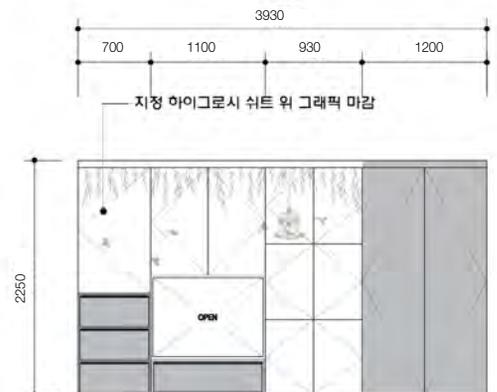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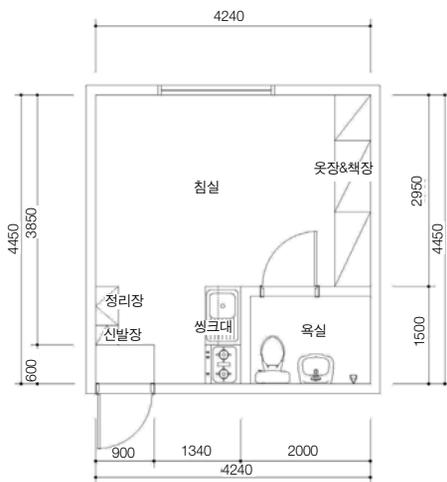
- B TYPE: TV+옷장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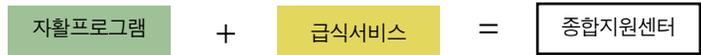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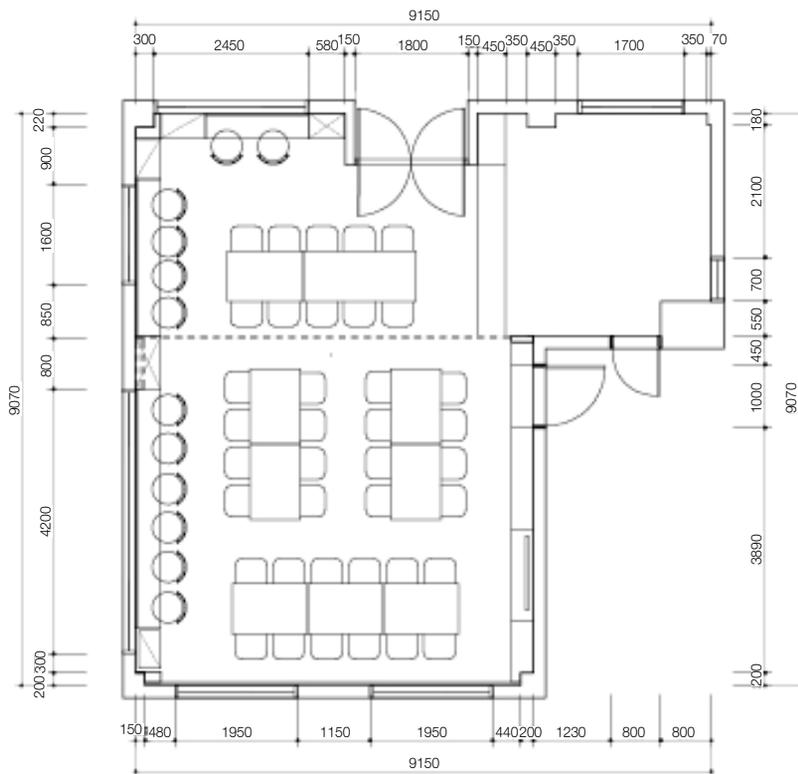
2. 종합지원센터

- 30인 이상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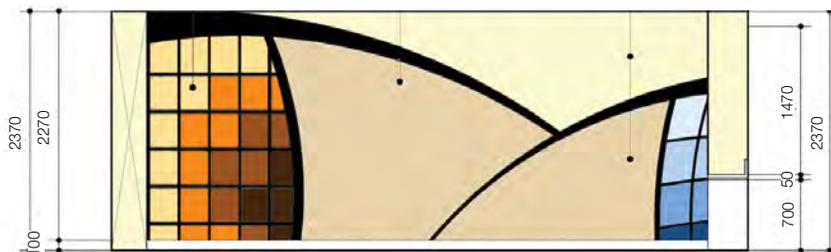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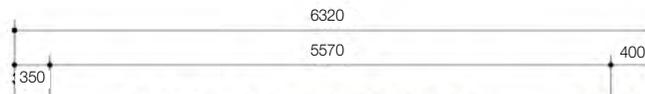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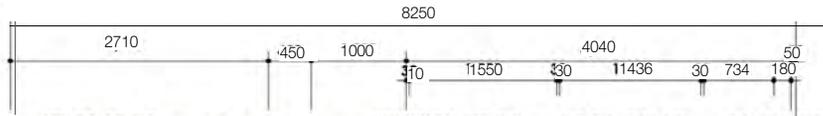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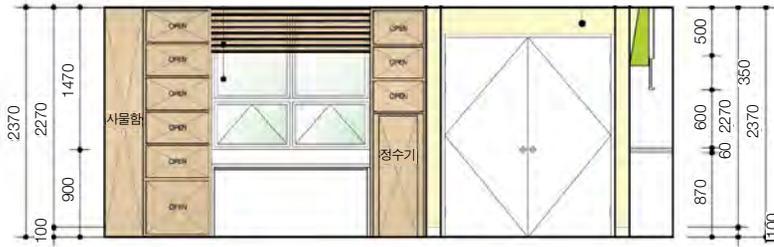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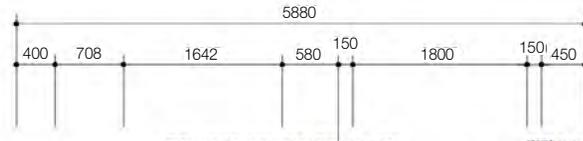


[개요]

- 시설명 : 1노숙인 시설
- 시설유형 : 노숙인 시설
- 개원년도 : 2005년 9월
- 시설현황 : 지하 1층~ 지상 3층



1층 평면도



3. 해외사례(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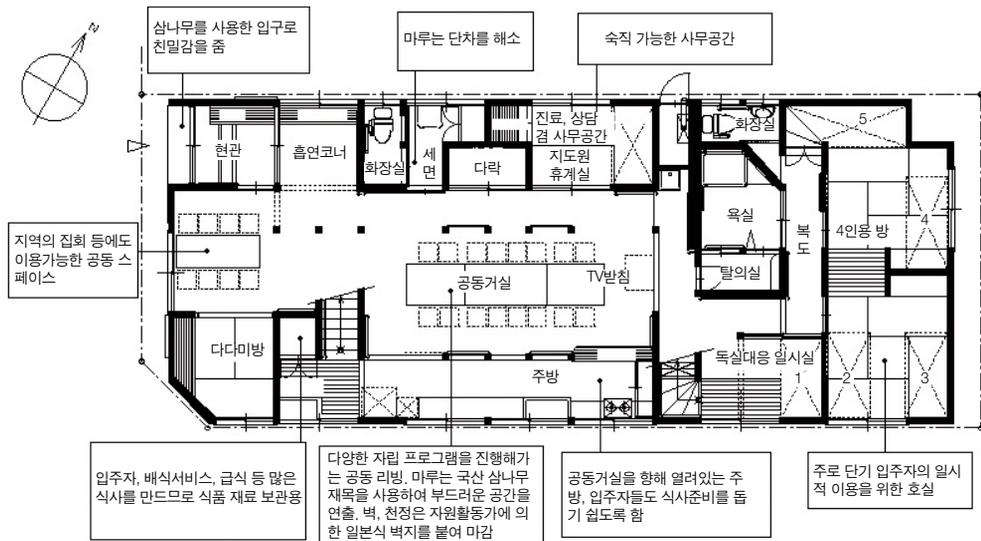
[개요]

- 시설명 : H노숙인 시설
- 시설유형 : 여성자립시설
- 개원년도 : 2000년도 8월
- 시설현황 : 지상1층~ 지상 2층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IV. 세부공간 디자인

01. 접근공간
 02. 생활공간
 03. 치유 및 활동공간
 04. 위생공간
 05. 급식 공간
 06. 관리 및 서비스공간
 07. 기타
-

01

접근공간

주출입구 및 출입문

단차없는 출입구와 손잡이등으로 안전한 출입을 지원한다.

1.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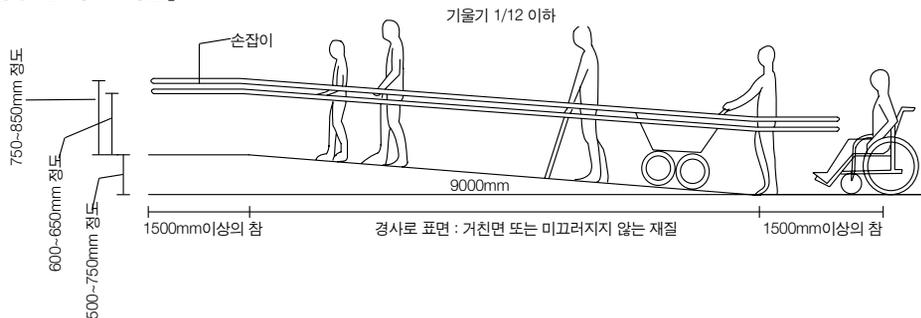
단차없는 주출입구

휠체어사용자 높이를 고려한 버튼위치와 외부벽체로 이어진 손잡이 설치

필수

- 최소 1200m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경사진 접근로의 경우 기울기가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기울기(S)=H/L (H:경사로높이, L:경사로길이)
- 바닥재질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 배수로 덮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바퀴 등이 빠지지 않도록 틈새 간격을 양방향 모두 2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접근로 1200mm 구간 안에는 간판, 주차장 등의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진입부 경사로 기준]



권장

- 보행자 한사람이 비껴서며 휠체어 한 대가 이동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1200mm 폭의 접근로가 필요하다.
- 기존건축물의 경우 지형상 접근로의 기울기를 1/18까지 완화하기 곤란한 때에는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 휠체어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기울기를 가능하면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 지형상 1/12까지 완화 가능하다
→ 1/12이하의 경사도 계산법 : $L \geq 12H$ (L:경사로길이, H:경사로높이)
- 750mm높이(H)를 극복하기 위해 9000mm길이(L)의 경사로 설치 (L=12H)
- 배수구, 공동구의 덮개 등은 가능하면 주출입구 접근로 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격자구멍이나 틈새가 있을 경우에는 휠체어 바퀴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여성의 구두굽 등이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간격이 20mm이하가 되도록 한다.
- 비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며, 줄눈폭은 좁고 평탄하게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배수구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휠체어의 바퀴나 지팡이 끝이 끼지 않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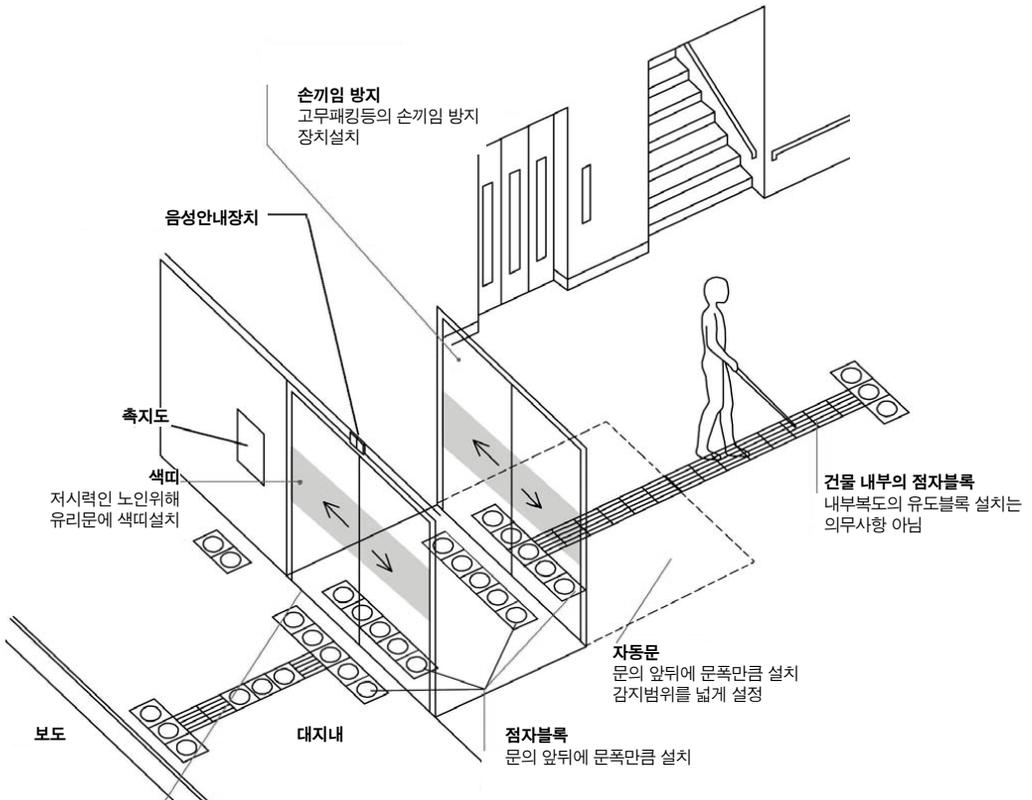
필수

- 문의 통과 유효폭은 800mm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문의 회전문이 아닌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 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00mm으로 하여야 한다.
- 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으로부터 800mm~900mm에 설치되어야 한다.
- 문 앞과 뒤 300mm 지점에는 점형블록을 문폭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 여닫이 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
- 문 앞과 뒤 300mm 지점에는 점형블록을 문폭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는다.
- 출입문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휠체어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전면유효거리를 확보하고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출입문 단차는 10mm이하 (최대20mm이하)로 하여야 한다.

권장

- 단차가 있어 턱낫추기를 할 경우에는 기울기를 1/12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미닫이문의 경우 바닥면 레일이 돌출되지 않도록 매립되어야 한다.
- 여닫이문의 경우 경고용 점형블록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 앞뒤로 300mm이격하여 설치한다.
- 경고용 점형블록 길이는 여닫이문 폭에 준거한다. 간격이 20mm이하가 되도록 한다.



02

생활공간

수면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편안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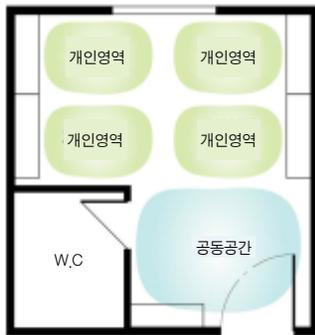
1. 수면실

- 다인실의 경우 침대를 설치하거나 세로로 긴 개인 수납장을 설치하여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 소속감, 주인의식을 갖도록 개인 사물함에는 각자의 이름을 부착한다.
-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의 바닥패턴이나 마감재 색상을 구분한다.
- 개인공간은 최소 가로 1200mm, 세로 2000mm가 되도록 계획한다.
- 큰 창을 통하여 자연광이 충분히 유입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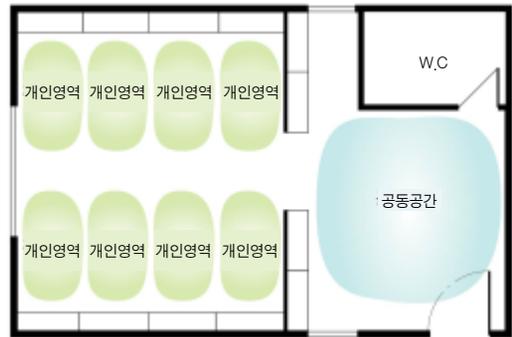


노숙인시설 침실 해외사례로 침대를 통해 개인공간의 영역을 구분 (침대 하부 수납장 설치)

- 개인 사물함으로 영역을 구분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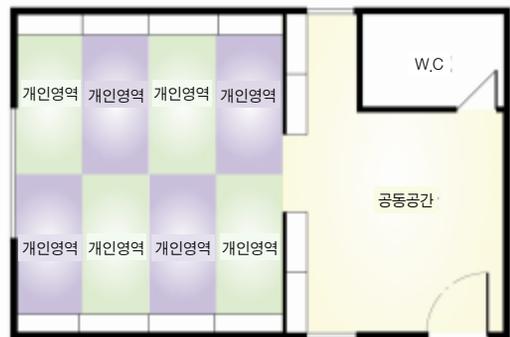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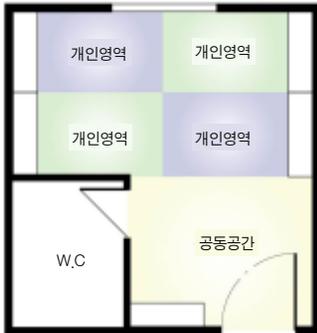


[4인실의 사례]



[8인실의 사례]

- 바닥마감재를 달리함으로써 개인영역과 공동영역을 구분한 사례



권장

- 이동식 가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붙박이 가구나 고정형 가구를 설치한다.
- 수목 등 식재를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차양장치를 부착한다.
- 개인별 침구류의 색상, 패턴 등을 달리 함으로써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

- 변경 전



- 변경 후



개인 수납공간 및 프라이버시를 위한 칸막이 설치

- 자립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는 1인실을 제공하여 생활의지를 높인다.



따뜻하고 아늑한 칼라의 개인실

개인별 잠금장치가 있는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거실

편안한 휴식과 자유로운 사회적 상호관계를 유도하는 거실을 계획한다.

2. 거실



넓은 복도의 활동공간



벽면의 기둥을 둥글게 하여 이동을 유도



파티션으로 개인영역과 공동영역을 구분

- 거실에서 각 실로의 접근은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거실 복도의 폭은 1200mm 이상을 유지하여 휠체어사용자와 다른 이용자가 자유롭게通行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개인 사물함, 침대 등과 근접하게 위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벽면이 돌출되거나 튀어나온 모퉁이는 둥글게 마감하거나 코너비드(모서리 보호대) 등을 설치한다.
- 각종 장, 선반 문갑 등의 앞은 1500mm 깊이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거실 벽면의 스위치 등 조작기는 벽 모서리로부터 500m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 휠체어사용자의 하부도달 높이는 350mm내외로 콘센트는 이보다 약간 높은 높이인 1200mm내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인터폰 및 각종 스위치 콘센트는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코너에서 50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환자격리실 및 임종실

노숙인으로 거처가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 또는 고령자가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분리된 개인실 및 안정된 임종실을 계획한다.

3. 환자격리실과 임종실



개인실 및 환자격리실



임종실

- 결핵 등 전염병에 감염된 노숙인을 격리수용하는 별도의 실을 계획한다.
 - 공동생활공간과 별도의 동선을 계획하여 접촉을 통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고령의 노숙인, 말기암 환자 등 갈 곳이 없어 노숙인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임종실을 계획한다.

03

치유 및 활동공간

프로그램실

치유를 돕고 교류하는 활동 공간으로 계획한다.

1.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구배치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등을 설치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계획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실은 방음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이 잦은 경우를 고려하여 이동·운반이 편리한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한다. 이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실은 환기에 유의한다.
- 치유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프로그램실 주변에는 대기 및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을 설치한다.
- 우산이나 휠체어 등의 수납공간, 벤치,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
- 중앙 집중식 책상 배치로 프로그램의 적극성 유도 및 소통공간 연출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2. 직업훈련실

- 교육장은 밝은 분위기의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소음이나 마이크 소리가 흡수될 수 있는 차음소재, 방음 소재를 천장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우산이나 휠체어 등의 수납공간, 벤치,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
- 시청각 강의가 가능하도록 스크린, 빔프로젝트 등의 설비를 갖춘다.
- 채광조절이 가능한 커튼 빛 블라인드 등을 설치한다.
- 강단, 칠판, 수강책상 등 영역을 분리하여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책상 주변에 각자 가방을 놓거나 우산, 목발 등을 기대거나 걸칠 수 있는 걸이 등을 계획한다.

3. 도서실



- 도서 수납을 위한 벽면 책장과 가구를 배치한다..
- 동선을 고려하여 책상 및 의자를 배치하고, 이때 통로 폭은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하여 계획한다.
- 바닥재질은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한다.
- 어둡거나 칩칙하지 않도록 혹은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에는 커튼등을 설치하여 빛조절을 하며, 인공조명을 적절히 계획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한다. 도서검색,독서에 적합한 전체조명 및 부분조명을 한다.
- 마감재 및 가구 색상은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자극적이지 않은 색을 선택한다.

4. 체력단련실

- 다양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 바닥은 전도에 따른 충격 흡수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벽면은 소음방지를 위한 흡음재를 부착한다.
-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 전면유리, 핸드바가 있고 음향시설을 갖춘 체육활동실을 계획한다.
- 탁구대, 런닝머신, 운동기구 등을 설치한다.



벽면재료는 소음을 방지하는 흡음재 부착



충격 흡수를 고려한 바닥마감재 설치

5. 대기 및 휴게실

- 신규 입소자의 경우 노숙생활에 따른 습관과 절제된 생활 패턴에 일시 적응하는 것이 힘들며 단체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에 개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기실의 용도는 신규 입소자들의 적응 기간 동안의 개별 주거실이다.
- 대기실의 마감은 원룸 주택의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며, 따뜻하고 친근감있는 색상의 마감재와 부드러운 느낌을 통해 입소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도하도록 한다.
- 바닥재는 청소가 용이하고 쿠션감이 있는 소재가 좋으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벽면, 가구, 도어 프레임의 모서리 등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요소가 없도록 한다.
- 대기실 내 욕실 및 화장실의 마감재는 청결한 색상의 간결한 배색으로 한다.
- 조명은 휘도가 높은 직접조명은 지양하고 대신 코브조명이나 코니스 조명방식 등 간접조명을 주광원으로 한다.

6. 진료실 및 의무실

- 30인 이상의 재활 및 요양시설에는 노숙인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 및 의무실을 설치 한다.
- 의무실에는 환자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의무실은 병원과 같은 시설적 느낌보다는 위화감이 들지않고 친근하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청결하고 안정감을 주는 진료실 및 의무실 설치

04

위생공간

화장실 및 샤워실

미끄러짐, 부딪힘에 의한 사고등의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세면공간을 확보한다.



휠체어 활동공간이 확보된 장애인 화장실

1. 화장실

- 화장실의 문턱은 턱과 단차가 없어야 한다.
- 화장실 내부에는 1400mmX1400mm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양변기 및 세면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바닥면의 물빠짐을 위한 기울기는 1/30이하로 설치하여 휠체어의 기울어짐을 방지한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600mm~700mm의 높이에 설치하고 수직손잡이는 길이를 900mm 이상으로 한다.
- 양변기 주변, 욕조 주변 등에 비상시 안전사고를 위한 비상벨을 설치한다.
- 욕실안의 여유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휠체어 회전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개조하여 밖여단이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2. 샤워실

-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900mm×900mm 또는 750mm×1300mm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비접촉 물체 감지),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샤워실에는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400mm이상 450mm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400mm 이상 1200m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낮이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설치



샤워부스 및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식 버튼과 샤워기 설치



휠체어사용자,지팡이사용자 등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구디자인과 식당공간

05

급식공간

식당 및 조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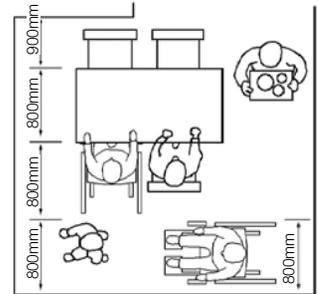
청결한 환경을 기본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배치로 계획 되어야 한다.

1. 식당

- 작업대는 공간활용 및 활동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ㄷ자형, ㄴ자형 배치를 하며, 작업대 사이의 활동공간은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1500mmX1500mm를 확보한다.
- 가열대와 작업대, 개수대는 휠체어가 가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비워둔다. (하부공간의 하단높이는 650mm, 깊이는 450mm 이상 확보)
- 식당의 바닥 마감은 청소가 쉬워야 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수납장은 휠체어 측면접근 시 내부의 물건을 꺼내기 어려우므로 슬라이딩방식(서랍식)으로 설치한다.

- 식당 내 식탁의 배치

식탁과 식탁사이는 900mm이상의 통로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식탁과 벽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1600mm를 확보하여야 한다. (휠체어고정폭 800mm +뒤측 통로폭 800mm)



2. 조리실

- 동선이 짧은 L자형이나 ㄷ자형 조리대의 형태가 용이하다.
- 식당 내 조리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좌식 공간인 경우 바닥 난방이 가능해야 한다.
- 조리실은 환기가 원활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 보관하고 식기류 등의 소독상태가 양호하고 건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사무실 및 상담실

직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담공간, 회의공간등 편리성을 기준으로 배치한 사무공간으로 계획한다.

1. 사무실

- 시설 전체를 관장하기 용이한 곳, 입소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상담 및 회의 공간을 설치한다.
- 직원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종 회의실, 직원교육실, 시설장실, 상담실 등과 근접 설치하여 상호 효율성 있는 연계를 고려한다.
- 시설관리를 위한 서류처리, 경리업무등과 간편한 회의테이블, 책상, 의자, 서고,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등을 설치할 면적과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자원봉사자나 직원의 휴식등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에는 테이블, 소파, 텀비공간 등을 마련한다.
-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옷을 갈아입고, 옷이나 가방과 같은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탈의공간을 제공한다.

2. 상담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집중 할 수 있는 상담실

- 상담실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외부의 소음에서 차단될 수 있는 벽체와 벽지의 색상이나 무늬가 아늑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담실은 책상과 책장 및 수납장, 의자 등으로 간결한 구성이 요구된다.
- 상담실은 입소상담, 퇴소상담, 프로그램 교육 상담, 기타 개인 신상 상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숙성과 기밀성이 요구된다.
- 흡음성능이 좋은 마감재를 사용한다.
- 조도는 다소 은은한 편으로 간접 조명이 좋고 필요이상 밝지 않도록 한다.
- 가구는 차갑지 않고 촉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감재를 사용한 것이 좋다.



대비가 명확한 벽체, 바닥의 색상과 논슬립타일로 마감한 계단

07

기타

복도 및 계단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를 반드시 계획 하고 유도등을 설치한다.

1. 복도



색채를 적용하여 강조한 계단실



복도의 벽체를 전시공간으로 활용



비상문과 비상등이 쉽게 인식가능

필수

- 휠체어 두 대가 교행하기 위해서 복도의 폭을 18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 복도의 유효폭을 최소 1200mm로 계획하여 비켜선 비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가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최소150mm~350mm까지 킥플레이트(보호용 금속판)를 설치하여 휠체어의 발 부분이 벽에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권장

- 충분한 채광 또는 인공조명을 계획하여 어둡고 칙칙한 복도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복도에 미술품, 그림, 색채를 활용하여 치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계단

필수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00mm 이상 설치한다.
- 계단 디딤판의 너비는 280mm 이상, 철타면(계단 한 단의 수직면)의 높이는 180mm 이하로 하고 목발이나 발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철타면은 막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00mm 이내마다 휴식 참 설치한다.
- 계단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계단코는 30mm 이상 돌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철타면(계단 한 단의 수직면)의 기울기는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줄눈넣기 등으로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는 계단폭 만큼의 점형블록을 300mm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는 300mm 수평연장하여 점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계단 측면에 연속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850mm 이내로 굽기는 32mm~38mm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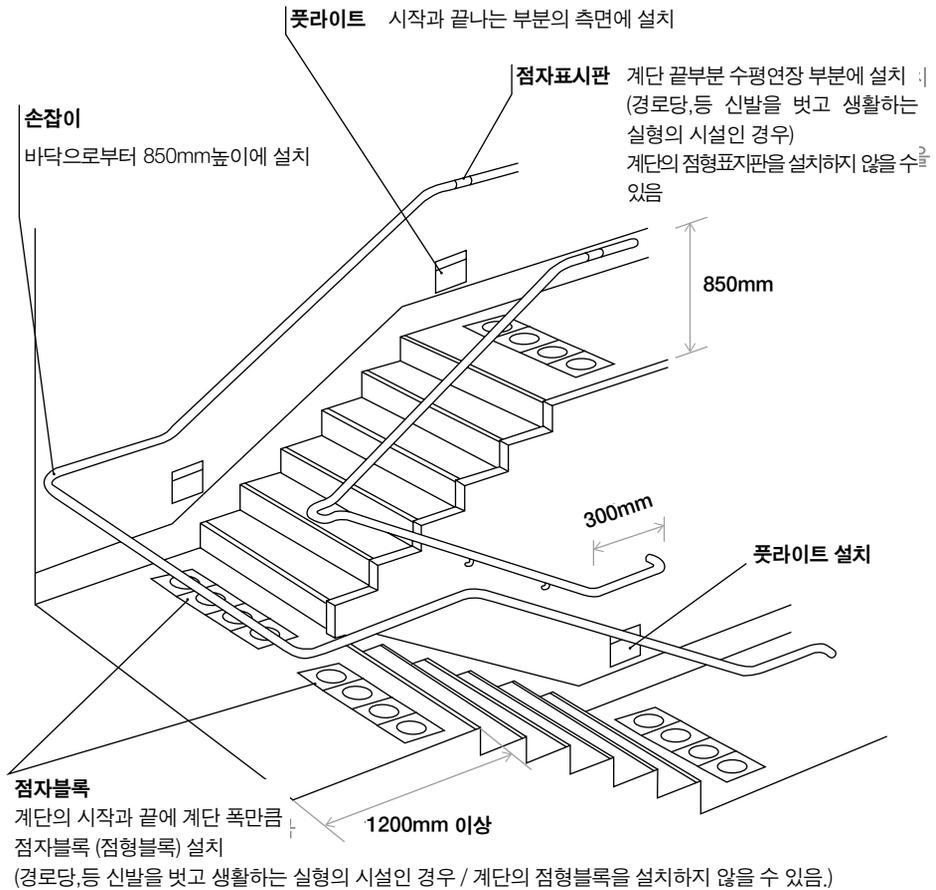
권장

- 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위한 계단실

-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법적으로 복도의 유효폭은 1200mm 이상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하고 있으나, 휠체어 두 대가 교행하기 위하여는 복도의 폭을 1800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닥면은 젖은 상태에서 미끄럽지 않게 마감하며, 카펫으로 마감한 경우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카펫의 털이 긴 것은 피한다.
- 계단아래 등 높이 2100m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0mm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한다.

- 노숙인을 위한 계단실

- 발을 끄는 것에 가까운 상태로 보행을 하므로 매우 작은 단차나 카페트, 쿠션 등 탄력 있는 바닥 재료는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 단단하고 미끄러운 바닥재질이나 광택이 있는 바닥 재질은 신체를 불안한 상태로 할 뿐만 아니라 심리면에서도 미끄러움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하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 다른 종류의 바닥재질이 이어지는 부분은 마무리면이 평탄하도록 한다(재료분리대의 높이가 바닥재의 높이와 같도록 설치한다.)





엘리베이터를 인지성을 높이는 색상적용과 내부를 볼 수 있는 창 설치

3. 엘리베이터

- 출입구에서 단차없는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앞에는 1400mmx1400mm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800mm이상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내부 유효바닥면적은 폭이 1600mm이상, 깊이가 1350mm 이상(승강시 표준규격상 15~17인승 정도)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일 경우에는 기존법을 적용한다.
- 휠체어 이용자용 버튼은 수평버튼으로 바닥으로부터 850mm 내외에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진입방향의 우측 (회전가능한 경우에는 좌측도 가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수직으로 설치된 일반버튼에는 점자를 붙여야 한다.
- 내부의 수평손잡이를 800mm~900mm사이 높이에 설치한다.
- 내부에서 휠체어 회전 불가능한 경우 후면에 거울을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는 도착 및 운행 여부를 알려주는 점멸등 및 음향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층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300m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한다.
- 사람들이 문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해 광감지식(비접촉 문체 감지) 개폐장치 및 되열림 장치 설치한다.
- 내부버튼을 누르면 점멸등 켜짐과 층수에 관한 음성안내가 동시에 안내한다.
-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 출입구 방향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권장

-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손가락의 터치만으로도 버튼이 눌러지게 되므로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더듬어 점자를 인식한 후 버튼을 누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누름식 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 복도에는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를 인식이 쉬운 위치에 알기 쉬운 안내판(사인물)을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엘리베이터의 출입문 방향이 층마다 다른 경우에는 음성으로 내리는 문을 알려야 한다.
- 시각장애이용 점자표지판은 휠체어 이용자용 조작반에 설치하지 않고 일반 세로형 조작반에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출입문 개폐, 비상호출, 상호통화장치 등에도 점자표시를 해야 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면 다리가 불편한 노숙인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편리하며,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의자를 접어 올려 내부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한
간이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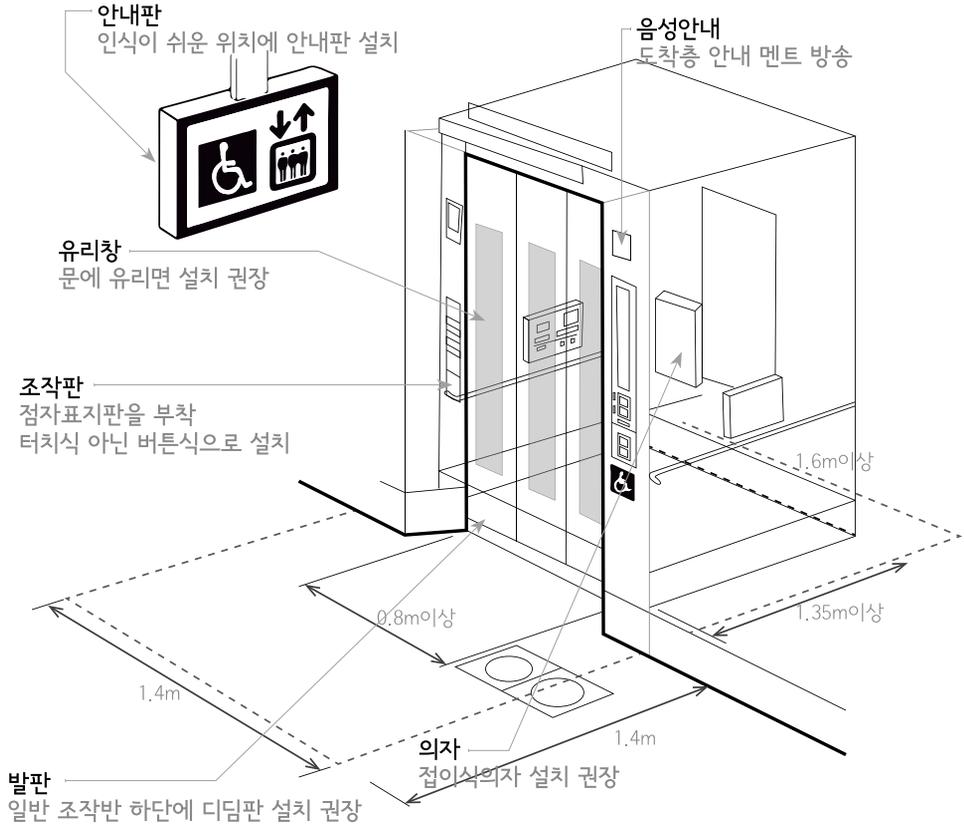


엘리베이터 동작소음을 감소시키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연출한 사례



엘리베이터 내부의 상황을
관찰 할 수 있는 모니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예시]



V. 공통 디자인요소

01. 마감재
 02. 문과 창
 03. 색채
 04. 조명
 05. 사인
 06. 가구 및 수납
-

1. 일반사항

- 시설적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 등의 재료 보다는 목재, 벽돌, 흙, 패브릭 등의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인체에 무해한 천연소재를 권장한다. 단, 시공에 사용하는 접착제 등도 무해한 성분으로 적용한다.
- 불연, 난연 재료를 선택한다.
- 흡음성능이 좋은 마감재를 선택한다.
- 오염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가급적 규격화된 재료가 관리에 용이하다.
- 재료의 사용은 인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마감재 선택시에는 단가 뿐 아니라 내구성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한다.

2. 바닥 마감재

- 활동하기에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 쉽게 더럽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한다.
- 뛰거나 걷다가 넘어져도 부상이 적도록 적당한 탄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의 사용이 많으므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포용할 수 있도록 방음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시각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광택이 심하고 눈부심이 강한 재료는 지양한다.
-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는 복잡한 무늬는 지양한다.

[바닥 마감재 예시]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마모륨	친환경 천연소재,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내구성, 방음, 충격흡수, 방습효과, 항균성, 난연성, 다양한 색상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무석면 타일	불연재(소방기준에 적합), 경제적, 내마모성,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다양한 색상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전도성 타일, 대전방지타일	대전방지성, 내약품성, 내스크레치성, 치수안정성 등 기능이 다양함, 내오염성,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천연대리석 및 카펫무늬 효과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차음시트	고탄성층의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정성 우수함, 내구성, 항균성, 고후도 제품으로 소음감소 효과,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고하중물의 이동에 강함 	생활공간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고탄성 바닥 시트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소음성, 탄성,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 고하중물의 이동에 강함 	생활공간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강화마루	친환경제품, 기능성(살균/항균 작용 등), 고온, 습기에 강함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친환경 마루	천연원료(옥수수, PLA(생분해성 섬유), 황토, 목분, 천연석, 구연산 등), 무해성, 내소음성, 내마모성, 열전도율 좋음(스팀청소, 왁스 사용불가) 	생활공간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코르크마루	자연친화적제품이며 무해성,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구성, 항균성, 내소음성 	생활공간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3. 벽 마감재

- 벽에 몸을 기대거나 손을 짚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한다.
- 가장 많이 시야에 들어오는 배경은 벽이기 때문에, 주조색은 차분한 색채로 선택하고 자폐의 경우 규칙적인 연속된 패턴의 사용을 금한다
- 색채나 문양은 일률적이지 않도록 활동단위별, 층별, 실의 성격별 등 공간에 따라 변화를 주도록 권장한다.
- 차분한 색채의 벽을 기본으로 나무재질의 문이나 가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벽 마감재 예시]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친환경벽지	유해물질 분해, 무해성, 탈취성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등
천연벽지	무해성, 탈취성, 향균성, 함유성분에 따른 기능성(바이오 원적외선, 습도조절, 피톤치드 방출)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등
인테리어타일 (인조대리석)	내오염성, 유지관리가 용이함 	로비 등
우드패널	친환경 제품, 방염, 벽지보다 내구성 및 내오염성 좋음, 특수코팅 처리로 유지관리 용이 	로비, 복도 등
타일 (기능성타일)	천연소재(흙), 유해물질 감소, 향균성, 향취성, 습도조절 	로비, 복도 등
규조토 보드	불연건재, 습도조절, 탈취, 향균, 실내공기정화, 차음성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4. 천정 마감재

- 활동공간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천정면의 구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 활동공간 외 복도, 프로그램실, 관리공간 등에는 용도에 맞는 적절한 천정마감재를 사용한다.
- 복도의 천정은 높낮이, 마감재 등을 동일 층이라도 다르게 처리하여 인지성을 높일 수 있다.
- 간접조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밝은 명도의 천정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벽마감재와 색상의 대비를 주어 시각적 대비를 연출하는 것이 공간의 생동감을 줄 수 있다.

[천정 마감재 예시]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텍스	불연 천정판, 무해성, 단열성, 경량성, 흡음성, 유지보수 용이함 기능성(유해물질 분해성능을 가진 특수도로 도장 마감)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SMC 천정재	친환경소재, 준불연재, 내구성, 내수성, 내습성, 항균성, 유지보수 용이함 	화장실 및 욕실
규조토 보드	불연 건재, 습도조절, 탈취, 항균, 실내공기 정화, 차음성 	프로그램실 사무실 식당 등

5. 기타 마감재

[도장재 예시]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친환경페인트	친환경 제품, 인체에 무해함, 내수성, 내알카리성, 내세척성, 항균성, 유지관리 용이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규조토	친환경 제품, 불연성, 습도조절, 단열, 방음효과, 항균성, 탈취효과 기능성(포름알데히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분해, CO2 흡수, 음이온 방출 등) 	
천연칠	유기농 원료 사용, 인체에 무해함, 다양한 색상, 목재 수명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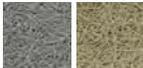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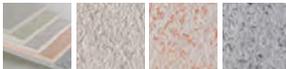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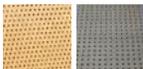
[타일 예시]

- 과장된 패턴이나 대비가 심한 칼라를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 소재의 특성상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유의하고 타일의 크기와 비례가 색상과 조화롭게 표현 되도록 해야한다.
- 자연석을 모방한 인조대리석 타일 중 색상과 패턴이 현란하거나 강한 톤의 소재는 지양한다.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세라믹타일	화산재를 이용한 세라믹 제품, 탈취효과, 습도조절, 항균, 유해물질 흡착, 유지보수 어려움, 내구성 낮음 	욕상 및 화장실, 청소및 세탁기실, 조리실 등
황토타일	원적외선 방사, 탈취, 공기정화, 항균, 습도조절, 유지관리 용이 	

[흡음재 예시]

- 다공성의 흡음재는 재료의 두께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두드러지나 흡음재의 두께가 도어나 창틀의 프레임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재료를 선택한다.
- 흡음재 위에 임의로 도장을 하는 것은 자재의 성능을 저하시킴으로 실의 용도에 맞는 자재 고유색상을 검토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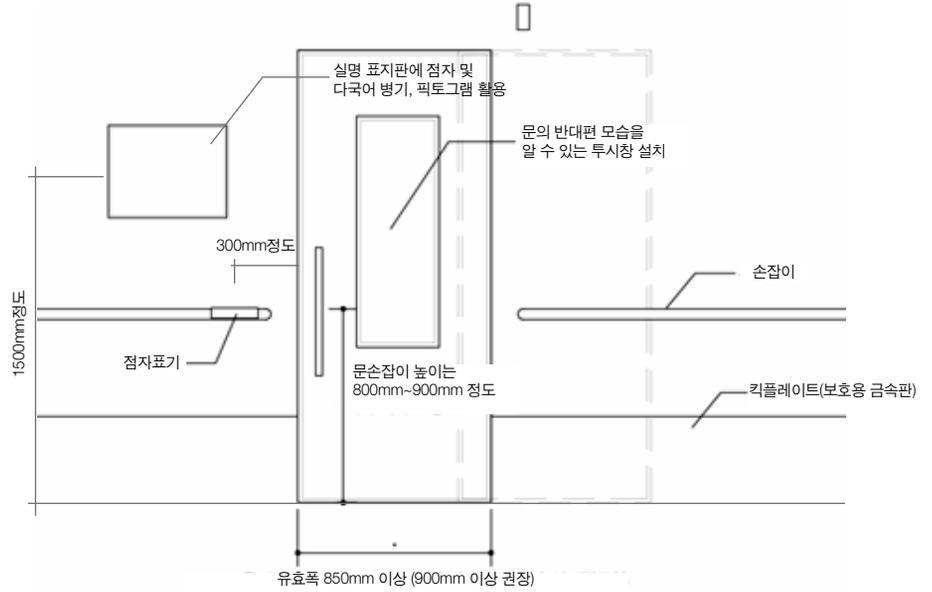
자재명	특징	적용공간
차음재	친환경 제품(황토, 맥반석 등을 첨가한 제품도 있음), 원적외선 방출, 저후도(1~4T) 고성능, 시공이 용이함 	방음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실, 강당 등
나무섬유흡음재 / 목모보드	흡음성, 난열성, 단열성, 향균성, 내구성, 내습성, 시공이 용이함, 변형이 적음 	
아트보드	폴리에스테르섬유로 제조, 인체에 무해함, 곡면 및 원형기둥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시공이 용이함, 형태 안전성 높음, 다양한 색상, 재사용 가능,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하지 않음 	
천연 면보드 / 푸레쉬 보드	천연섬유 면사와 독성이 없는 팽창 퍼라이트로 제작, 부드러운 질감과 다양한 색상, 불연성, 흡음성, 보온성, 보냉성, 단열성, 무해성, 사용시 안전성 시공이 용이함 	
흡음판넬	친환경성, 유지관리가 용이함, 향균성, 방충성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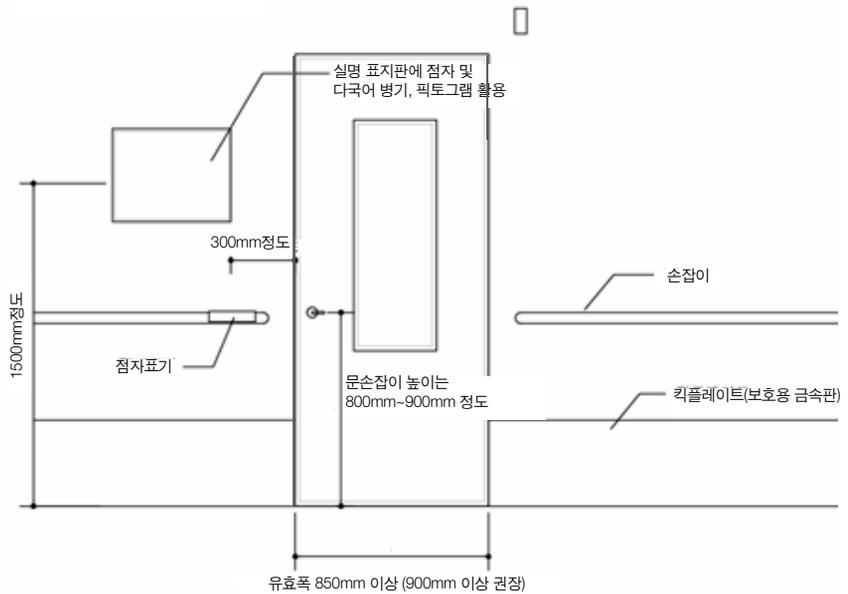
- 무겁지 않으며, 천천히 닫히도록 도어체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 출입문보다 무거운 현관문이나 주출입구의 문에는 반드시 도어체크(문이 자동적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외부와 통하는 주출입문 등에 (반)자동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열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닫히는 속도를 천천히 한다.
- 현관 출입구 유효 폭은 900mm 이상, 가급적 환자운반용 침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1200mm 이상을 권장한다.
- 주 이용실의 경우에는 출입문 옆 1500mm의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전면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문의 손잡이는 막대형, 레버, 핸들식 등으로 하며, 바닥면에서 900m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한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실은 여닫이문 보다는 간단한 조작이 가능한 미닫이문을 설치한다.
-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의 경우, 장애인이 서서 문을 열 때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개구부 측면에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실내 출입문의 경우 내부 투시가 가능한 유리창이 있는 문을 권장한다. 유리창의 높이는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최소 500mm 이상으로 설치하되,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 실내 출입문의 바닥면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한다.
- 회전문은 지양하고 안전을 위한 손킴방지 보호대 설치를 권장한다.
- 주요 출입구부분의 바닥면, 문의위치와 출입구의 폭이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바닥재료 등에 시각적인 대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종류에 따른 설계 기준]

미닫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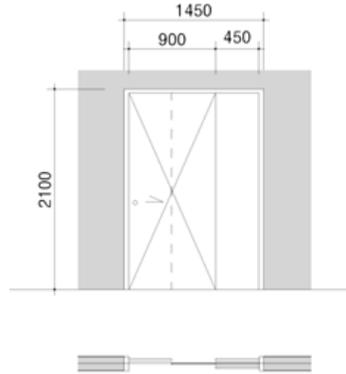


여닫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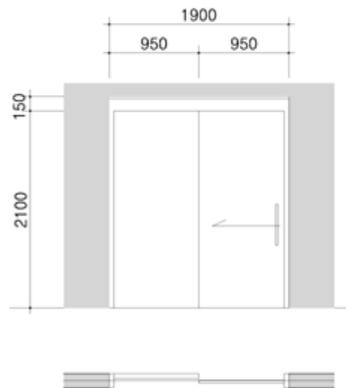


[다양한 문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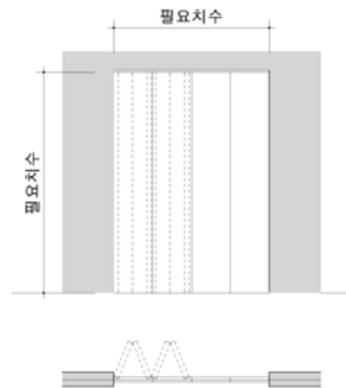
3단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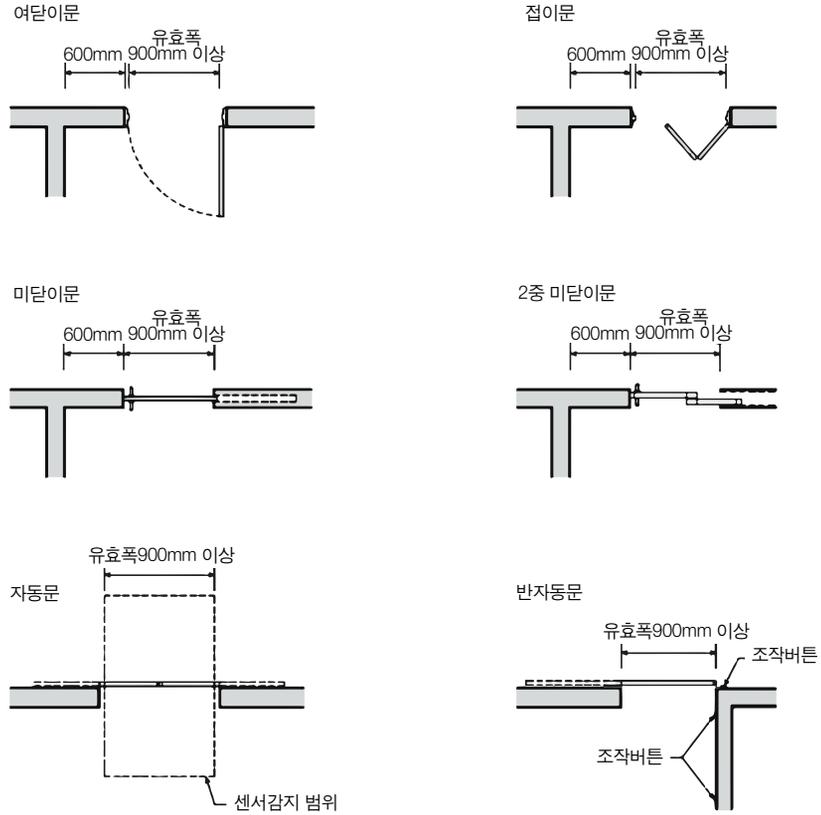
슬라이딩 도어



접이식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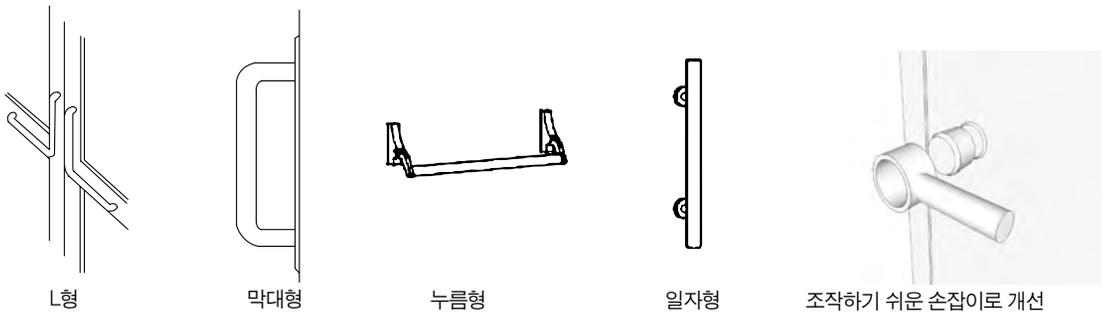


[문의 종류에 따른 유효폭 기준]



[문 손잡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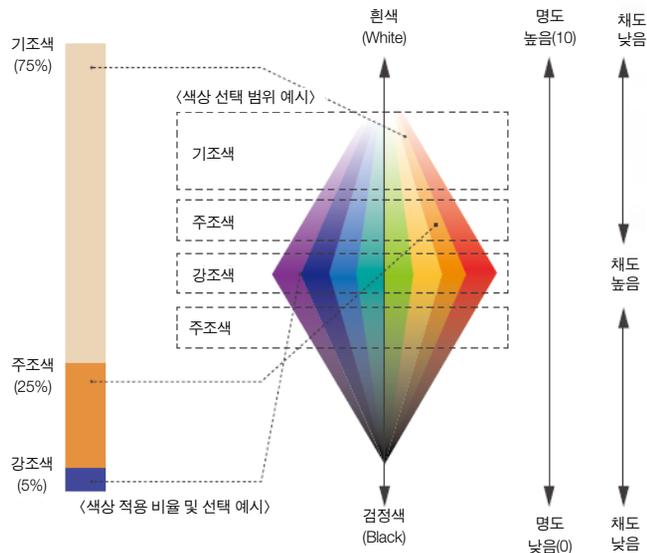
문손잡이의 종류는 손의 크기나 악력에 상관없이 열기 쉬운 레버형 혹은 일자형으로 설치하며, 청소관리실이나 조리실, 의료실 등 위생이 중요한 경우 누름식을 권장한다. 단, 노브형은 모든 문에 지양한다.



1. 일반사항

- 색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을 높이는 색채계획을 한다.
- 시설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 공간이 가진 기능과 위치에 적절한 색채조절을 한다.
- 전체 공간이 가지는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색채계획의 목표를 수립한다.
- 예술성이 강조되거나 개인의 선입견이나 취향에 따라 건물, 설비, 집기 등의 색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전체 공간의 기능적 분류에 대응하여 조닝(zoning)과 그룹핑(grouping) 하여 색채를 계획하고, 비품에 이르는 상세한 부분도 빠짐없이 실시한다.
- 색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효과를 고려한다.
- 각 색상이 제공하는 심리적 이미지, 온도감, 강약, 시간감 등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색이 가진 확장, 수축 등의 성질을 활용하여 공간감을 조절한다.
- 색이 가진 상징, 식별, 안전기능을 고려하여 유대감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계획한다.

[색상선택의 원리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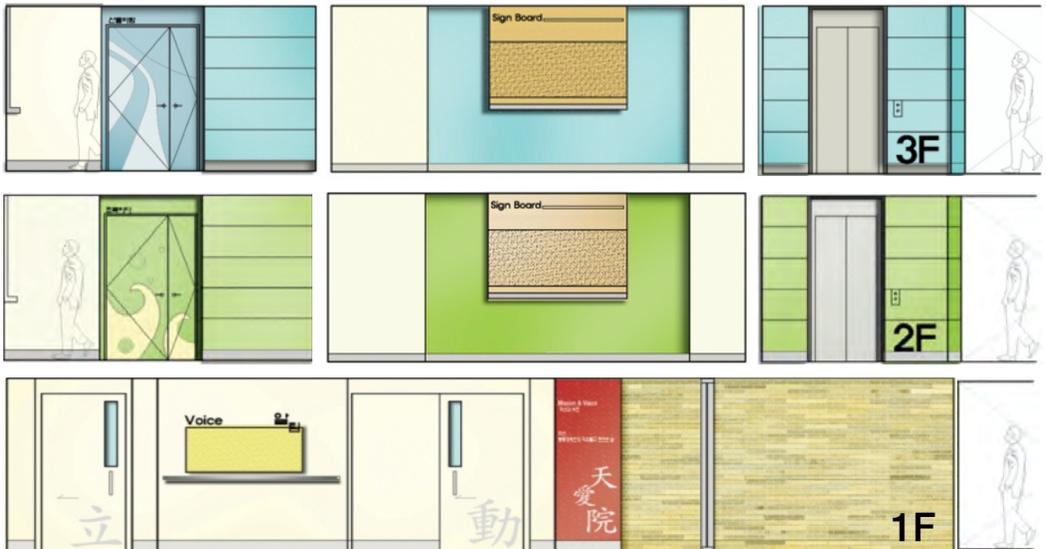


[시설 색상 적용 사례]



다양한 색을 적절히 활용하여 층 구분과 공간의 영역을 쉽게 인지가능하도록 함

- 층별 주조색을 선정하여 사인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거나, 바닥이나 벽 마감재에도 적용하여 층별 공간의 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화장실은 층별로 같은 색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1. 일반사항

-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시각에 의한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명의 양과 질을 배려하여 적정 조도 수준, 조명방법, 조명기구 선택이나 배치를 결정한다.
- 하나의 조명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반조명, 국부조명, 작업조명 등 다양한 조명 방식을 적절히 혼합 구성한다.
- 상황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여 눈부심 제거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밍(Dimming) 스위치 설치를 권장한다.
- 비상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조명계획을 검토한다.
- 요양시설에서는 그림자가 발생하는 조명을 피하고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실에는 눈에 피로감이 없는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 부드럽게 확산되는 전반조명을 주된 조명으로 하며, 스탠드나 벽부 등의 국부조명을 함께 사용한다.
- 천장조명은 누웠을 때 눈부심이 없도록 램프가 노출되지 않는 등기구를 사용하거나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배치한다.
- 침대 머리맡에는 개인용 조명기구와 수발용 국부조명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침실 내 화장실 출입을 위해 자동감지센서가 있는 발 밑 조명을 설치하거나 침대 옆에 손 닿기 쉬운 곳에 조명스위치를 설치한다.

2. 공간에 따른 조명설치

- 위생공간

- 세면대 거울 위에 벽부등을 부착하여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색온도가 높고 연색성이 좋은 조명으로 계획한다.
- 램프의 교환을 비롯한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내수성 제품의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 스위치는 문 밖 인접 벽에 설치하여 불을 켜 후 밝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식당

- 식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식탁 위 700mm~900mm 정도 높이에 펜던트형 또는 할로겐 매입등의 국부조명을 설치한다.
- 식탁에서 식사 이외에 독서나 신문읽기 등의 작업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수준의 조도를 제공하는 장치를 부착한다.
- 식당에 할로겐 매입등, 벽부등, 장식장이나 벽 그림에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여 시설적인 느낌을 줄일 수 있다.

- 복도

- 전반조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며, 다른 공간과의 밝기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야간 이동을 위해 눈부심이 적은 상시조명등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벽면 게시물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및 벽부등을 설치한다.

- 계단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직접 광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눈부심현상이 생기지 않고 방향성이 강하지 않은 조명을 설치한다.
- 계단이나 보행자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위치에 조명을 설치하며, 계단 디딤판과 벽면의 경계가 명확히 보이도록 한다.

- 옥외공간

- 옥외공간의 통로 조명은 보행로를 밝히는 것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램프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계단이나 경사가 심한 곳의 조명설치에 유의한다.
- 옥외 조명기구는 기후, 온도, 오염에도 강한 것으로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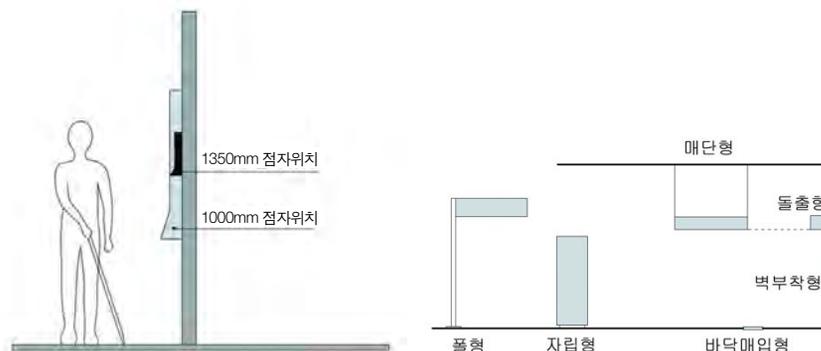
픽토그램을 적용한 실 안내사인과 색상과 바닥패턴으로 인지성을 높인 출입문

05

사인

1. 일반사항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촉지도,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설치하여야한다.
-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의 설치높이는 설치되는 시설의 중심선이 바닥으로부터1000mm~1200mm 범위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촉지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입식, 벽부착형 촉지도를 설치하며, 촉지방식은 반구형으로 해야만 시각장애인이 촉지할 수 있다.
- 내부의 평면을 촉지도로 제작할 때에는 약식기호와 이를 설명하는 범례를 사용하지 말고, 평면도의 해당 실 위에 직접 점자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자의 크기, 서체, 배색 등은 고령자, 장애인 등이 보기 쉬우며 알기 쉬운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아동 등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 기호 등에 의한 표시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에는 음성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하여 충분한 안내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인적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촉지도와 같은 안내시설은 만지기 쉬운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1350mm~1500mm의 높이에 점자가 위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1000mm 내외의 낮은 높이에 촉지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사형으로 설치하여야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 멀리서 부터 보는 사인은 머리위에서 부터 매단 형태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가까이서 보는 사인은 자립형 또는 벽부착형 등이 알기 쉽다.
- 안내표시는 표시 내용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설치 방법을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 3000mm 거리내에서 인식하기에 가장 좋은 사인의 높이는 최고 2600mm 이내로 하여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00mm내외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시설의 사인 적용 예시]



사용여부를 알리는 안내표시



안내축지도와 음성유도기



멀리서도 인지하기 쉬운 돌출 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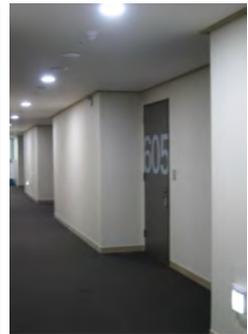
샤워실 안내사인



계단실 안내사인



도어부분 안내사인



프로그램실 안내사인



화장실 안내사인



실별 유도사인



06

가구 및 수납

1. 일반사항

- 가구의 경우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것을 선택한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모서리에 충격을 방지하는 부드러운 재질의 마감재를 덧대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 문손잡이는 잡거나 열때 닫기 쉬운 형상과 크기, 바닥으로부터 850mm~1200mm에 높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문손잡이는 손을 걸거나 끼울 수 있는 바 형을 권장하며, 문에 매입된 형태, 구형으로 돌출된 형태는 잡기 어려우므로 지양한다.
-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딪쳐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목재나 쿠션소재 등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다.
- 청소가 용이하도록 단순한 디자인과 재질을 적용한 가구를 선택한다.

2. 세부사항

[의자 및 테이블]

- 휠체어 장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실에는 휠체어의 높이를 고려한 가구를 선택해야 한다.
- 프로그램실, 식당 등에 배치되는 의자는 넣고 빼기 쉽도록 가벼워야 하며, 넣고 뺄 때 잡기 편하도록 손잡이나 홈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다.
- 의자 선택시 테이블의 다리 사이간격에 유의하여 적절한 너비의 의자를 선택해야 한다. 테이블 다리 사이에 의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고, 너무 꽉 끼이지 않도록 하여, 의자를 넣고 빼거나 앉을 때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의자의 배치나 이동이 잦은 프로그램실 등에 놓이는 의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고정 가능한 바퀴나 두 개의 다리에 바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고, 보관시 쌓을 수 있어 점유면적을 적게 차지 하는 의자를 선택하도록 한다.
- 테이블의 이동이나 배치의 변형이 잦은 프로그램실의 경우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고정 가능한 바퀴가 부착된 테이블을 선택하고, 보관시 점유면적을 적게 차지 하는 테이블을 선택해야 한다.
- 테이블은 휠체어 대응을 위해 테이블 하부에 무릎이 들어가고, 지지대 등에 발판이나 발끝이 닿지않도록 하며, 다리 사이의 간격에 유의하여야 한다.

VI. 부록

01. 법적 기준 및 권장사항
 02. 체크리스트
 03. 노숙인시설 컨설팅 사례
-

법적기준 및 권장사항

'법적 기준'에는 관련 법률에서 의무로 지정하고 있는 항목 중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권장사항'에는 관련 법률에서 권장으로 지정하고 있는 항목 및 본 가이드라인에서 강화하여 권장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의 해당항목 출처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 기준'
- 소 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특정소방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 시설등의 종류'
- 건 축** : '건축법 시행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기 타** :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 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접근로]

공간 및 요소	법적기준	권장사항
단차 및 유효폭	· 유효폭 1200mm · 단차 20mm 이하	· 유효폭 1800mm 이상 · 단차 없음
기울기	· 최소 1/18 이하	· 종단기울기 1/20 이하 횡단기울기 1/100이하

[접근로]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경계	· 연석·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 곤란한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 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다르게 마감	· 연석은 주변과 대비되는 색상과 미끄럼 방지 처리
바닥마감	· 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포장은 이음새의 틈이 없고 평탄하게 시공 · 빠질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 설치 (격자구멍 또는 틈새 간격은 20mm이하)	·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
보형장애물	·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주지 않도록 설치 · 가로수는 높이 2100mm까지 가지치기	· 가로수는 높이 2500mm까지 가지치기
기타		· 접근로 상부에 차양시설 등 설치 · 도로에서 주출입구 까지 손잡이 설치 · 야간조명 등 설치

[주차장]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설치장소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및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주차공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 3300mmx 5000mm 이상 · 바닥면의 기울기 1/50 이하 ·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통로의 유효폭 1200mm이상, 가급적 단차 제거	· 통로의 유효폭 1500mm 이상, 단차없음 · 주차공간과 통로의 단차없음 · 주차공간과 통로 상부에 주출입구까지 차양시설 등 설치
유도 및 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 ·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안내표시 ·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시의 규격 W 700mm x H 600m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H 1500mm	· 주차공간 진입부와 주차장 내에 국제 심벌마크에 따른 안내유도표지 설치

[주출입구]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단차와 문턱	· 주출입구와 통로와 단차 20mm 이하 · 문턱, 문지방, 홈이나 단차가 없는 출입구 바닥면	· 주출입구와 통로의 단차 없음
점자블록	· 출입구 300m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 바닥재의 질감 등의 차이를 적극 활용
유도안내 설비	·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1개 이상 설치	
기타	· 기타 세부기준은 각 실의 출입문의 규정 (유효폭, 활동공간, 문의 형태, 문손잡이)을 적용	

[로비]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안내데스크	·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 상단높이 700mm~900mm ·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0mm이상, 깊이 450mm이상 공간 확보	· 앉거나 서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높이가 다르며, 의자가 있는 안내데스크 설치 · 목발, 가방 등을 들 수 있는 거치대 마련 · 어디에서나 눈에 쉽게 띄는 안내사인

[복도]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유효폭	· 유효폭 1200mm 이상	· 유효폭 1500mm 이상
바닥	· 단차 없는 바닥면 (단,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 휠체어의 주행성 고려
보행장애물	· 복도의 유효높이 2100mm 이상 확보	
손잡이	· 연속하여 설치 · 1단손잡이 높이 800mm~900mm (2단손잡이 높이 : 상단 850mm, 하단 650mm 내외) · 손잡이 지름 32mm~38mm · 벽과 손잡이의 간격 50mm 내외	· 2단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 벽면측 점자, 복도측 문자 표기
기타		· 킥플레이트 높이 150mm~350mm 설치 · 모서리 부분은 사선 및 둥글게 마감하거나 코너비드 설치

[복도]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유효폭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00mm 이상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00mm 이상
형태		· 직선 또는 꺾임형태(회전형 지양)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00mm 이내 마다 수평참 설치
디딤판과 철퍀면	· 철퍀면은 반드시 설치 · 철퍀면의 기울기는 디딤판 수평면 기준으로 60도이상 · 계단코의 돌출길이는 30mm 미만 · 디딤판 너비 280mm 이상, 철퍀면 높이 180mm 이하 · 디딤판의 너비와 철퍀면의 높이는 균일한 치수	
손잡이	· 계단 측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 손잡이의 끝부분에 300mm 이상 수평손잡이 설치 · 양끝 및 굴절부분에 충수-위치 등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 기타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 규정 적용	· 벽면측 점자, 복도측 문자표기 · 굴절형 등 잡기 쉬운 구조
바닥마감	· 계단코에 줄눈넣기 또는 미끄럼방지개로 마감 (바닥 표면 전체를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기 사례외)	·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며 계단코 설치 · 바닥재와 식별하기 쉬운 계단코 색상 · 계단의 시작과 끝 디딤판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마감
점형블록	· 계단의 시작 및 끝지점의 300mm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 블록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 바닥재의 질감 차이 등을 적극 활용
기타		· 난간설치 부분에 20mm 이상의 추락 방지턱 설치

[실내경사로]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설치장소		· 복도나 통로 등에 실내 경사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계단과 병설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유효폭 1200mm이상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50mm 이내마다 수평침 설치 ·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1500mm x 1500m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유효폭 1500mm이상
기울기	· 기울기 1/12이하	· 기울기 1/15 이하 (층간이동을 위한 경사로) · 기울기 1/20 이하 (실내 단차 발생으로 인한 경사로)
바닥마감	· 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손잡이	· 경사로의 길이 1800mm 이상, 높이 150m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연속하여 설치 · 기타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 규정 적용	· 2단 손잡이 설치
기타		· 50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엘리베이터]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설치장소	·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층간 이동의 경우 설치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대체 가능)	· 계단과 인접하여 설치 · 층간 이동시 엘리베이터 설치 권장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전면 1400mm x 1400mm 이상의 활동공간 · 승강장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의 틈 30mm 이하 ·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W1600mm x D 1350mm이상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800mm 이상	· 전면 1500mm x 1500mm 이상의 활동공간 · 생활실 등이 지상층에 없는 경우 간이 침대의 승강이 가능한 크기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900mm 이상
점형블록	· 호출버튼의 300m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 바닥재의 질감 차이 등을 적극 활용

[엘리베이터]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조작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치의 높이는 800mm~1200mm 이하로 설치 · 휠체어 이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 높이 850mm 내외 설치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르기 쉬운 큰 버튼
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내부에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최소 800mm~900mm에 연속하여 설치 또는 수평 손잡이 사이간격 30mm 이내로 측면과 후면에 설치 · 기타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 규정 적용 	
기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 후면의 600m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 설치 · 승강장과 내부에 점멸등 및 음향(음성) 신호장치 설치 · 광감지식 개폐장치인 경우, 센서 높이 300mm~1400mm · 되열림장치설치 · 엘리베이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은 점멸등과 음성 안내 · 층별 출입구가 다른 경우 출입구 방향 음성안내 ·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최소 150l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내부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전면의 일부를 유리 마감 · 잠시 기대어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등을 설치

[각 실의 출입문]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단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턱(문지방, 홈)이나 단차가 없는 출입구 바닥면 	
유효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유효폭 800m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00m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유효폭 900mm 이상
활동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옆에 600mm 이상의 공간 확보 · 출입문옆 벽면에 수직손잡이 설치
문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 · 도어체크가 있는 여닫이문은 3초 이상의 닫히는시간확보 · 자동문의 개방시간은 충분히 확보, 가급적 감지범위가 넓은 개폐고의 작동장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손잡이는 레버형, 수직 및 수평막 대형 등 이용하기 쉬운 형태
문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손잡이 중앙지점의 높이 800mm~900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손잡이는 레버형, 수직 및 수평막 대형 등 이용하기 쉬운 형태
점자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이 이용하는 실은 출입문옆 벽면의 1500mm 높이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안전 및 대피]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소화설비	간이스프링 클러	·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으로 창살이 설치된 시설	
경보설비	비상경보 설비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비상방송 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시설	
	자동화재 탐지설비	·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 속보설비	·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시각경보기	· 연면적 400㎡ 이상	
	가스누설 경보기	· 모든시설	
피난설비	피난기구	· 모든층 (피난층, 지상1층, 2층, 11층 이상은 제외)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모든시설	
	비상조명등	·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소화용수 설비	상수도소화 용수설비	· 연면적 5,000㎡ 이상	
소화활동 설비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 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연결살수 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 이상	

[안전 및 대피]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방화구획 및 직통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 단 지하 1층에서 지상을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유도안내설비 점자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곳에 전자문자안내판 등을 설치 · 공중이 이용하는 실은 출입문옆 벽면의 1500m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소 화 설 비	수동식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 (수량의 1/2 이상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 가능)	
	옥내소화전	·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층수가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모든 층	
	스프링클러	·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화장실]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설치장소	·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유효폭	· 양변기 부스 출입문 통과유효폭 800mm 이상	· 출입문 통과유효폭 900mm 이상
바닥마감	· 단차 없는 바닥면 ·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W 1600mm x D1350mm 이상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800mm 이상	· 생활실 등이 지상층에 없는 경우 간이 침대의 승강이 가능한 크기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900mm 이상
양변기	·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유효바닥면적 W1400mm x D1800mm 이상 · 양변기 한쪽 측면에 750m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출입문이 여닫이문일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가 원칙 · 좌대 높이 400mm~450mm · 양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설치,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 수직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600mm~700mm에 설치하되, 한쪽손잡이는 회전식으로 설치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900mm 이상, 손잡이 하단이 바닥면으로부터 600mm내외에 오도록 설치 ·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양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 가능 위치에 설치 · 출입문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 설치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 측면 활동공간 확보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1400mm x 1400m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 자동문, 미닫이문, 접이문 · 바닥청소가 용이한 벽면부착형 권장
소변기	·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0mm~900mm에 설치 · 좌우 손잡이 간격 600mm 이내 · 수직손잡이 바닥면으로부터 1100mm~1200mm 이하에 설치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 바닥청소가 용이한 벽면부착형 권장

[화장실]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세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대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850mm 하단 높이는 650mm 이상 · 세면대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 수도꼭지에 냉·온수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 색상과 점자표시 · 수도꼭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대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거울 설치
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300m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재의 질감 차이 등을 적극활용
기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시와 음성유도장치 설치 · 출입구 옆 벽면의 1500m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하는 점자표지판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욕실, 샤워실, 탈의실]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용 구분하여 설치
출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유효폭 900mm 이상 ·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바닥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 기울기 1/30 이하 ·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 (욕조바닥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 기울기 1/50이하 · 바닥난방 · 탈의실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
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조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 욕조 높이는 400mm~450mm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샤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하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 샤워실(샤워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활동이 원만 할 수 있는 최소 900mm x 900mm 또는 750mm x 1300mm이상 · 샤워용 접이식 의자의 높이는 최소 바닥으로부터 400mm~450mm 	

[욕실, 샤워실, 탈의실]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수납공간의 높이는 400mm~1200mm · 수납공간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손잡이		· 탈의실, 욕조 및 샤워기 주위에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는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 설치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 냉온수 구분의 색상 및 점자표기

[프로그램공간]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대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 작업대의 상단높이 700mm~900mm · 작업대의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0mm 이상, 깊이 450mm 이상의 공간 확보 	· 관련도구 수납공간 계획
물리치료실		·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등의 배치 고려
수치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게 설치 · 보행을 도울 수 있는 손잡이 설치
미술활동실		· 세면대 설치
음악활동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실 계획 · 악기 비치 공간 계획
방과후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혹은 여러명이 학습 할 수 있는 공간 가 구류 설치 · 편안한 자세로 휴식 할 수 있는 가구 비치
주간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식사 등의 공간 가급적 분리 · 거실, 정원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이용자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조기교육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복도로 난 창 계획

[프로그램공간]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작업재활실	· 설치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서가, 도서검색대는 열람석과 같은 구조로 설치
체력단련실		· 샤워실 및 탈의실과 인접설치
컴퓨터실		· 휠체어 통과 폭을 고려한 가구 배치
도서실	·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 열람석 상단 높이 700mm~900mm · 열람석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0mm 이상, 깊이 450mm이상의 공간 확보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서가, 도서검색대는 열람석과 같은 구조로 설치
음악활동실	· 강당 또는 회의실 설치	· 강당의 문은 최소 1800mm이상으로 하며, 방향이 다른 최소 두개의 출입문 설치 · 휠체어 이용자와 동반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공간은 1석당 폭 900mm, 깊이 1300mm · 휠체어 이용자가 단상에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 혹은 리프트 설치 하고 낮은 연설대 비치, 연설대는 '도서실' 의 열람석과 같은 구조로 설치

[관리/서비스공간]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조리실		· 채광과 환기가 좋고 창문에 방충망설치 ·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 확보 · 조리실 직원의 탈의, 세면, 휴식공간 마련
식당		·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을 고려한 식탁과 식탁 사이 간격 최소 1800mm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확보	
재활상담실	· 비밀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 설비 확보	
자원봉사자실	· 자원봉사자 / 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확보 · 장애인보호자 대기실과 검용 가능	· 자원봉사자의 소지품 보관함 및 휴게공간 마련

[관리/서비스공간]

공간 및 요소	법적 기준	권장사항
보호자 대기실	· 보호자 대기실 설치	· 프로그램실 주변에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 곳곳에 마련 · 냉 / 난방에 유의
휴게실	· 휴게실 또는 쉼터 설치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 700mm~800mm 이하 ·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 자동판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 출구의 높이 400mm~1200mm · 자동자판기의 조작버튼에 품목, 금액 등을 점자표기	
의무실	· 의무실 또는 위무재활실 설치 ·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 / 기구를 마련	· 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하여 약품을 가져갈 수 없도록 약품보관함 등에 적절한 잠금 장치설치
세탁장		· 세탁에 필요한 기계 / 기구를 확보
건조장		·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창고		· 비품이나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별도 마련

02

체크리스트

[세부공간]

세부공간 구성요소		해당공간						비고	
		외부공간	매개공간	복도계단	기능실	침실	위생공간		기타공간
바닥	모든 출입문의 문턱이 없는가?		○	○	○	○	○	15mm 이하	시각
	바닥은 단차나 요철이 없고 평활한가?		○	○	○	○	○		
	재료분리대 굽름이 있는 경우 30mm 이하인가?	○	○						
	필요시 굽름의 경사판 설치가 용이한가?	○	○						지체
	바닥재의 패턴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가?		○	○	○	○	○		발달
	실내 조도를 고려하여 색상을 선택하였는가?		○	○	○	○	○		발달
	물기에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선택하였는가?		○	○	○	○	○		
	현관, 방풍실, 복도 바닥재의 변화감이 있는가?	○	○	○	○	△	○		
	바닥재는 적절한 쿠션감이 있는가?	○	○	○					시각
	보행, 휠체어 이동시 마찰 소음이 나지 않는가?		△	△	○	○			
	1/30 이하의 적절한 배수구배 인가?	○	○				○	테라스	
	야간에는 족하등으로 밝게 유지될 수 있는가?	○	○	○					
	낙상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	○	○		○	테라스	시각
	바닥재의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가?	○	○	○	○	○	○		지적/발달
	바닥재의 부분 교체, 보수가 수월한가?	○	○	○	○	○	△		
	공간의 용도에 맞는 내마모성이 있는가?		○	○	○	○	○		
점자유도블럭의 위치는 적절한가?		○	○	○				시각	
세부공간 구성요소		해당공간						비고	
		외부공간	매개공간	복도계단	기능실	침실	위생공간		기타공간
벽체	출입문의 유효폭이 850mm 이상인가?		○	○	○	○	○		
	문 측면 유효폭이 450mm 이상인가?		○	○	○	○	○		
	복도 벽면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었는가?		○	○	△				지체/시각
	수직, 수평 안전바의 설치는 적절한가?		○	△	△	△	○		지체/시각
	충분한 면적의 채광창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	△		
	통풍을 위한 환기창이 고려되어 있는가?		△	○	○	○	△		
	창문의 개폐는 안전하게 유지되는가?		△	○	○	○	△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는가?			△	○	○			

[세부공간]

세부공간 구성요소		해당공간						비고
		외부 공간	매개 공간	복도 계단	기능 실	침실	위생 공간	기타공간
벽체	동작 중 부딪칠 수 있는 돌출물은 없는가?	○	○	○	○	○	○	지체/시각
	벽면의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가?	○	○	○	○	○	○	
	파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수월한가?	○	○	○	○	○		
	벽과 틀의 모서리에 부상방지 형상을 적용했나?		○	○	○	○	○	지적/발달/ 시각
	매입식 수납장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	○	○	△	
	벽면 장식이나 부착물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나?		○	○	○	○	○	
	점자표지물의 부착 위치가 적절한가?			△		○	○	지적/시각
	투시창의 경우 접합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하였나?		○	○	○	○	○	시각
	벽 마감재의 패턴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가?		○	○	○	○	○	지적/발달
	벽 마감재의 색상이 조화롭고 안정감이 있는가?		○	○	○	○	○	발달
	벽부형 사인의 크기와 부착 위치가 적절한가?		○	○	○	○	○	지적/발달
	전면유리는 1m이내 간격의 수직프레임이 설치되었나?							
세부공간 구성요소		해당공간						비고
		외부 공간	매개 공간	복도 계단	기능 실	침실	위생 공간	기타공간
천장 및 조명	불연재로서 경량의 마감재를 사용하였는가?		○	○	○	○	○	
	흡음성, 차음성이 높은 천장재를 사용했는가?		○	○	○	○	△	
	조명의 휘도가 높지 않도록 밝은 색상인가?		○	○	○	○	○	
	공간의 기능에 맞는 등기구를 선택하였는가?	○	○	○	○	○	○	테라스
	권장 조도에 20~30% 상향하도록 설치하였나?		○	○	○	○	○	
	휘광 방지를 위해 간접조명을 충분히 고려하였나?			△	○	○		
	조도분포가 고르도록 등 간격이 적절한가?		○	○	○	△	△	
	광색은 차갑지 않고 따뜻한가?		○	○	○	○	○	
	조명 스위치의 위치와 높이는 적절한가?		○	○	○	○	○	지체
	원격조작 방식 등기구 사용을 고려하였는가?			△		○		지체
	스피커의 설치 위치는 적절한가?			△	○	○	△	
천장재와 설치물의 보수, 유지관리가 수월한가?		○	○	○	○	○		

[세부공간]

세부공간 구성요소		해당공간						비고	
		외부 공간	매개 공간	복도 계단	기능 실	침실	위생 공간		기타공간
설비	비दान방이 설치되어있는가?		△		△	○	○		
	EHP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나?			△	△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급수 시설이 있나?	○		○	○	○	○	테라스	
	법적 기준에 맞는 소방설비가 완비되어있나?		○	○	○	○	○		
	조작이 수월한 수전을 설치하였는가?	○					○		
	조작스위치, 밸브 등의 높이는 적절한가?			○	○	○	○		
	강제 급배기 설비가 설치되어있는가?			△	○	△			
	각실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	○	△		
	통화가 가능한 인터폰 설비가 있는가?		○		△	○	△		
	방법 및 관리 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본 체크리스트는 복지시설의 설계자, 관리자, 감리자가 세부공간의 건축과 인테리어 설계, 시공 시 실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크리스트임.
- 외부공간: 시설의 외벽, 외부 대지, 주차장 등
- 매개공간: 시설의 주, 부 진입구, 현관, 방풍실 등
- 복도,계단: 시설 내부의 이동을 위한 공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 기능실: 강당, 교육실, 식당,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
- 침실: 입소자의 생활실, 침실, 다인실 등
- 위생공간: 샤워실, 화장실, 욕실 등
- 기타공간: 주로 실외의 테라스, 옥상 정원 등

서울시립 양평센터

2000년 5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폐 화전초등학교 분교 연면적 147.8평의 개축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가족관, 희망관 등 숙소 및 사무실, 재활작업장, 거실, 식당, 강당, 주방, 샤워실, 세탁실, 운동장, 오리사육장, 부식창고, 프로그램실 등 총 5개동으로 구성.

- 현황

1. 입소자 연령분포 : 남성 노숙자 입소 시설로서 50~60대가 약 70%, 70~80대가 30% 임.
2. 입소기간은 평균 8개월 내지 10개월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18개월 내지 24개월, 최장기 입소자의 재원기간은 7년임.
3. 수용가능 총 인원은 136명이며 5인실 22실, 7인실 2실, 12인실 1실로 구성되어있음.
4. 일용직 및 자활 근로자 비율 : 20~30% 이내
5. 현 사무직 인원 : 총 14명, 2~3명의 여유 공간 요망
6. 식당 근무 인원 : 주방 근무 인원 5~6명으로 여성임
7. 세탁인력 : 공공근로자가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하며 개인 내의는 개별세탁 함
8. 부식 반입 주 2~3회 차량반입하며 부식창고까지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많음
9. 영농학교 프로그램: 지금까지 시행해온 영농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양봉, 고구마, 단호박, 가지, 방울토마토 등의 재배이며, 추후 다양한 자활 영농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예정.
10. 유료 이발소 운영: 전문적인 이용 기술가 구내 이발소 운영.



- 입소자의 요구사항

1. 실외 공간을 활용한 운동프로그램 희망
2. 무료한 시간을 보낼 소일 거리가 없음
3. 지역적 특성인 동절기 한파(-27도)로 인해 방한 성능 요망
4. 샤워실 (30~40명 수용) 확장
5. 당구대, 운동시설, 도서관, 바둑실 등을 갖춘 휴게실 희망

프로그램 구성계획

1. 프로그램 배치계획

양평센터의 주된 자활프로그램인 영농학교 건립계획에 필요한, 교육 및 실습,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지원 기능 등을 기준으로 층별 배치계획을 작성함.

■ 요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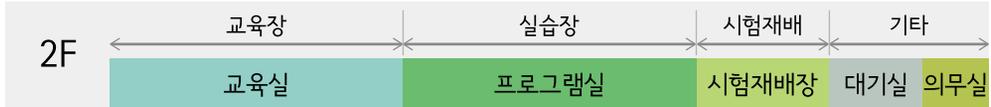
1F : 식당, 휴게실 및 행사용 다목적공간 등

2F : 교육장, 실습장, 시험재배 등

3F : 관리 및 사무공간, 실외 정원공간 등



■ 교육지원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공간, 상담실, 원장실, 직원 샤워실 및 테라스 배치.



■ 교육실 및 교육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병렬배치하고 양쪽 공간에서 모두 관찰이 가능하도록 중간 테라스를 시험재배공간으로 활용.

■ 신입 입소자의 적응기간 숙소인 대기실 및 관리자 당직실 배치.



■ 숙소동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식당과 휴게실을 배치.

층별 공간구성계획

1. 1층 공간구성 계획

- 1층은 숙소동에서 이동하여 식사를 하는 식당과 휴게실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계실과 화장실을 배치하였다.
- 부식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기존 사무동과 신축 건물 사이의 폭을 차량통행이 원활한 4m 폭 이상 확보되도록 배치하였다.
- 주출입구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외부 벽면 마감재의 변화를 주고 방풍실의 깊이 또한 3.5m 이상으로 하였다.
- 건물 전면 대지로 부터 데크와 주진입구, 식당 부진입구 등은 단차가 없도록 해야한다.



주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시선의 축

주출입구의 정면에 배치된 E/V는 2, 3층으로의 연결 동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내,외부의 식당 출입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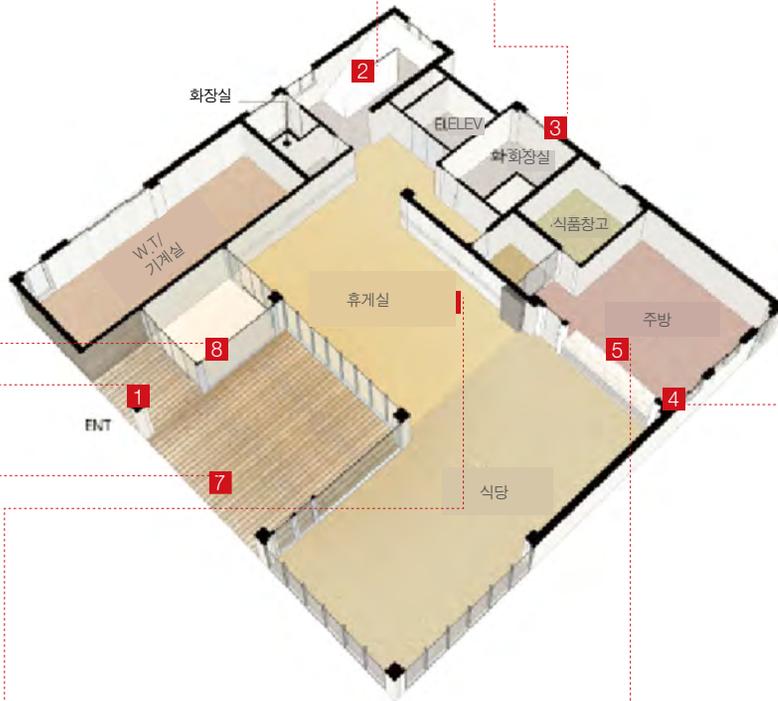
식당은 60여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대기인원이 발생하므로 야외의 데크와 내부의 휴게실 공간 등, 인원을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해 중정 데크에서도 출입가능하도록 부진입구를 만들었다.

1 | 현관 병풍실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수동 양개 문을 설치하는 경우 도해에 따름

8 | 병풍실 내 돌출된 기둥에 맞추어 벤치형 의자 설치

2 | 계단벽면의 핸드레일은 300 mm이상 수평연장하여 벽면에 말단부를 부착 시킴
- 손스침은 목재시공
- 계단코를 25~38mm이내로 만들고 시인성이 높은 논슬립 처리함

3 | 여자화장실의 창은 불투명 유리 블럭 등으로 시공하여 채광은 되나 투시되지 않도록 차폐함



6 | 1층 홀의 유리벽을 제외한 벽면은 800mm~900mm높이로 핸드레일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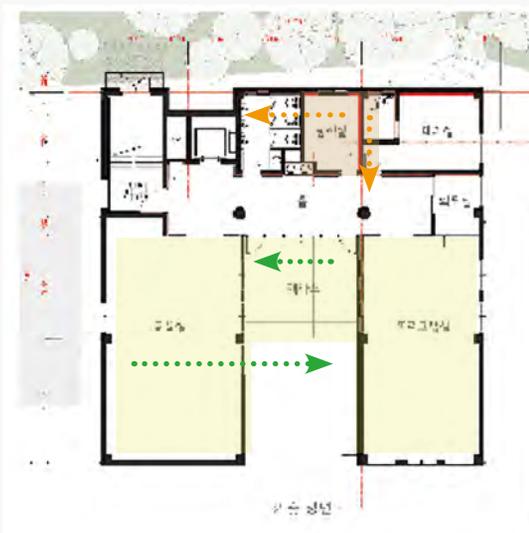
7 | 방부목 소재의 데크 시공하는 것을 권장함. 단, 현관과 식당 출입구에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함

4 | 주방 배식구는 행사 시 차폐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함

5 | 주방의 바닥은 원화한 배수를 위해 트랜치를 설치하되 관련 도해를 참고함

2. 2층 공간구성 계획

- 테라스를 사이에 둔 교육실과 프로그램실 등 2층에 위치한 3개의 공간은 영농학교의 가장 중심적 공간으로서 이론교육(교육실)과 실습(프로그램실) 그리고 시험재배 (테라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구성이다.
- 3개의 공간은 상호 개방적인 시선의 축이 확보되며, 의무실과 당직실 등 교육과 실습의 지원 및 관리공간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 2층에서는 건물 후면의 산책로, 또는 야외 운동공간으로 연결되는 브릿지를 설치하여, 대지의 환경요소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동선의 흐름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교육실

교육실은 주로 이론강의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실

교육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습목적의 공간

테라스

모종, 작물의 시험재배를 위한 공간.

대기실

신입 입소자의 적응을 위한 임시 개별 숙소인 대기실은 정숙성을 유지하며 인접한 당직실과 의무실의 지원을 받기 편리하다.

1 계단실 방화문은 개방시 벽안에 매입 되도록 함

3 산책로 연결 브릿지에도 800mm~900mm높이의 핸드레일 시공하고 목재 손스침 마감함

2 교육실은 미닫이 문을 설치하고 천장과 벽에 차음, 방음 성능을 고려한 자재로 마감함



4 대기실은 입소 적응자를 위한 공간 이므로 원룸주택의 분위기로 마감재 선정함

5 테라스 바닥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구배를 주고 논슬립 바닥재로 마감하며 채소, 곡식의 시험재배 등을 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함

6 프로그램실은 교육 내용의 실습을 위한 공간이므로 실습 작업장 용도에 맞는 마감재를 선택하고 트렌치를 시공할 경우 제시한 관련 도해를 참조함

3. 3층 공간구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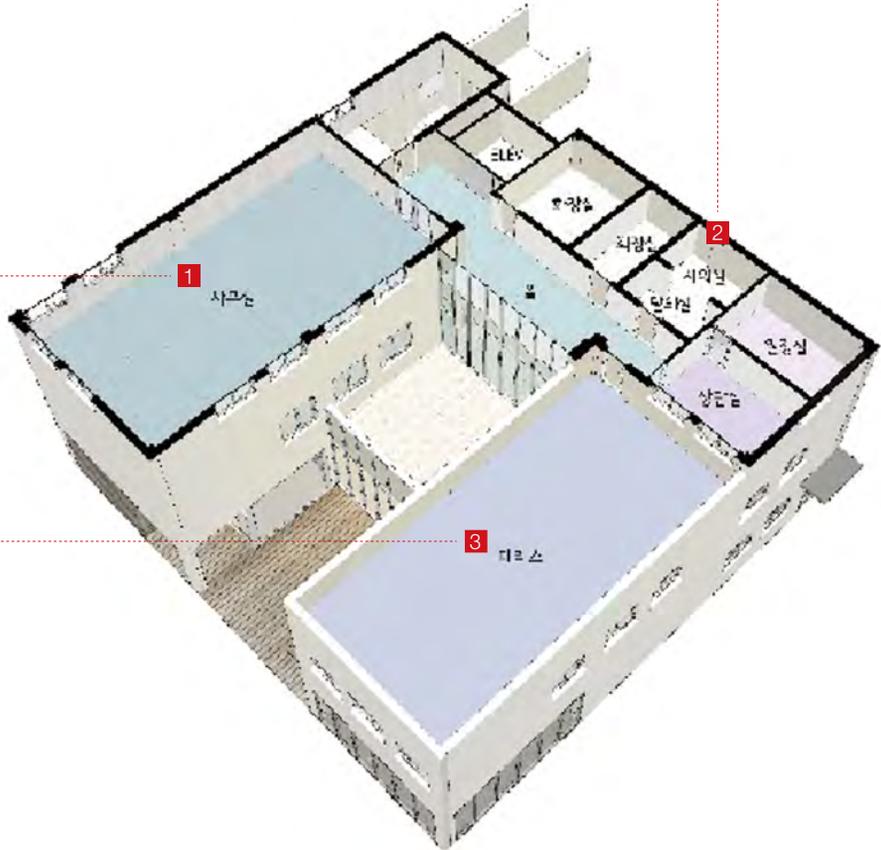
- 입소자 뿐만이 아닌 관리자를 위한 공간의 배려.
- 쉼터를 관리하는 사무공간이 위치한 3층은 복지시설 관리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들을 위한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제공자인 관리자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수용자로서 업무만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외에 육체적 휴식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간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 직원용 샤워실과 2층 옥상층의 테라스를 활용한 야외 휴식공간은 주로 관리자를 위해 배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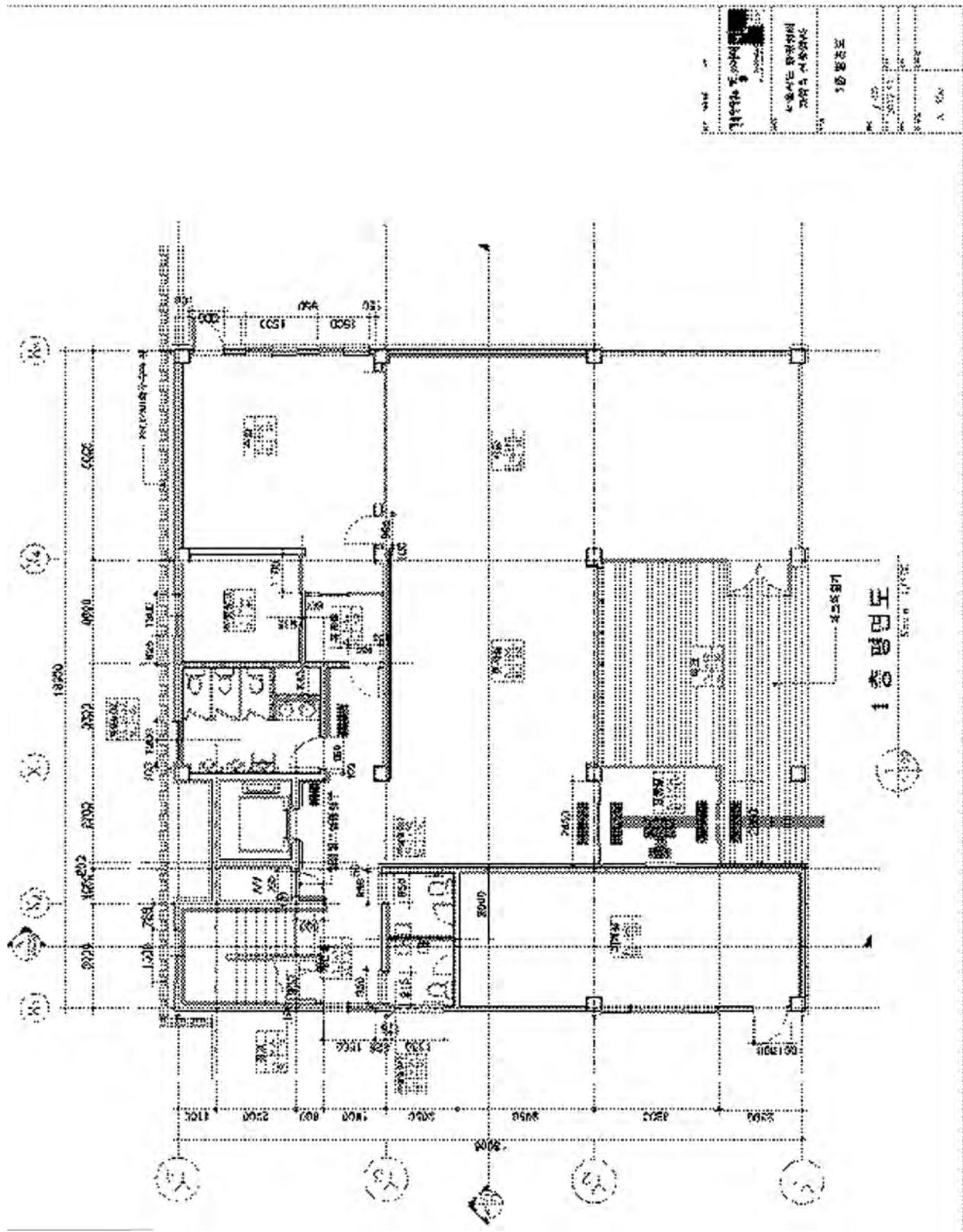
- 사무실**
16명이 근무 할 수 있는 레이아웃 구성
- 상담실**
신입입소자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정보교류,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샤워실**
입소자들의 샤워실은 숙소에 있으므로 직원 샤워실로 활용함
- 테라스**
옥상조경, 야외 휴식공간으로 활용함

1 사무실도 미닫이 문을 설치하고 천장과 벽에 차음, 방음 성능을 고려한 자재로 마감함

2 사위실 바닥은 탈의실과 사위실 사이의 단차가 없도록 하고 트렌치 설치 시 관련 도해를 참고함



3 테라스 바닥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구배를 주고 논슬립 바닥재로 마감하여 옥상 조경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층 평면도
Scale 1/500

제출 일자	2023.11.15
제출 대상	1층 평면도
제출처	한국디자인엔지니어링
제출인	김민준
제출처	1층 평면도
제출인	김민준
제출처	1층 평면도
제출인	김민준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특별시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박형중	디자인정책과장
강효진	디자인개발팀장
양 훈	담당
황상미, 권은선, 김희정	디자인개발팀

자문위원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연구진

전미자	사단법인 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고상균	관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효성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김미경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정희선	사단법인 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Copyright© 201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d.

문의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Tel. 02 2133 2722

